

민원수요 급증에 따른 자동차등록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system for registration of automobiles due to rapid increase
in civil service demand

조용준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신지윤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법·조례 자문	이진수 (법학박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 2017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7년 10월 31일
발행 2017년 10월 31일
디자인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Tel.031-8007-6000
I S B N 979-11-87778-51-6 (9332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조용준. 2017. 「민원수요 급증에 따른 자동차등록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 요약

행정자치부는 과거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 절차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자동차등록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를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을 비롯한 대도시들에 자동차등록 민원이 폭주하게 되었으며 수원시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자동차등록대수의 약 15%, 경기도의 약 63.4%에 달하는 규모의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약 120여개의 자동차매매상사가 입점할 예정인 수원자동차복합단지(수원자동차복합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데,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은 수원시에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자동차 거래량 증가로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부담 가중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원시 자동차등록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동차등록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전국자동차등록제 도입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며, 자동차 등록 업무구성 및 전국과 수원시의 자동차등록 현황과 자동차등록 업무량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수원시의 자동차등록 업무량 증가 원인을 살펴본 결과, 수원시의 자동차 번호판 교부 수수료 인상 전인 2014년 9월까지는 교부 수수료가 타 지역에 비해 최고 팔천원 가량 저렴했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리적으로도 약 200개의 자동차매매상사가 입점해 있는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수도권 전철 1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수원역이 위치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찾아와 일평균 약 900건이 넘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시 도로교통 관리사업소 업무현황과 자동차등록과 조직 및 인력현황, 민원처리 업무량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동차등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과 담당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등록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인터뷰 결과 자동차등록과는 매년 격무부서로 지정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등록 관련 민원 처리업무 과중으로 현장 단속·점검 업무 등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사업소 공간 활용으로 직원들의 업무효율 및 건강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이외에도 구매자들이 손쉽게 자동차등록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대국민 자동차포털(www.ecar.go.kr)을 구축하였으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중고차매매업자들이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를 받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등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파악한 자동차등록 관련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수원시 차량등록업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 정비를 검토하였다. 우선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일반 내용을 살펴보고, 자동차등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자동차등록제는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매매단지가 밀집된 지자체에서 등록 관련 행정행위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입은 민원인의 사용본거지로 배정되어 등록지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은 이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익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요건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지방세 보전 가능성 및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등록업무 분산을 위한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폭증으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 및 향후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조직 개편과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원시의 자동차민원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이 마련되는 기반이 조성되길 희망한다.

주제어: 자동차등록, 전국자동차등록, 등록업무 폭증,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활성화

| 차 례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수요 예측 방법의 이론적 고찰	7
1. 정량적 예측 방법(Quantitative technique)	7
2. 정성적 예측 방법(Qualitative technique)	9
제2절 자치단체 정원산정 제도변화 및 선행연구 검토	10
1. 정원산정 제도변화	10
2. 선행연구 검토	13
제3장 자동차등록제 및 관련 업무 현황	17
제1절 자동차등록제도 개관	17
1. 자동차등록제의 의의	17
2. 자동차등록제 적용범위	18
3. 전국자동차등록제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19
제2절 자동차등록 업무 현황	20
1. 자동차등록 업무 구성	20
2. 전국 및 수원시 자동차등록 현황	29
3.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량 증가의 원인	38
제4장 수원시 차량등록 업무 현황	39
제1절 수원시 자동차등록과 조직 및 인력 현황	39
1.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연혁 및 직제 현황	39
2.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업무 현황	41
3. 수원시 자동차등록과의 민원처리 업무량	44

제2절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상 애로사항 파악	48
1. 수원시 자동차등록과 담당공무원 인터뷰	48
2.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 관련 애로사항	48
제3절 경기도 내 타 지역 차량등록 업무 현황 비교	50
1. 개요	50
2. 각 지역별 자동차등록업무 현황	51
3. 자동차등록업무 현황 비교	64
제4절 차량등록 민원수요 예측 및 적정인원 산출	68
1. 자동차등록 업무의 적정인원 산출	68
2.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및 적정인원 예측	69
제5절 소결	75
1.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75
2. 개선방안 도출	78
제5장 수원시 차량등록업무 개선방안 도출	81
제1절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 정비 검토	81
1. 개요	81
2.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일반 내용	82
3. 자동차등록제도 관련 문제점	89
제2절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한 법령 정비방안	92
1.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전가능성	92
2.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95
3. 등록업무 분산을 위한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활성화 방안	98
4. 조례의 제정을 통한 온라인시스템 운영 활성화	105
제6장 결론	107
제1절 요약	107
1. 자동차 등록 민원 건수 폭증	107
2. 자동차등록제 관련 현황 분석	108
3. 민원 건수 폭증으로 인한 부작용	110
4. 타 지자체 비교·분석	111
5. 수원시 민원수요 예측 및 차량등록 업무의 적정인원 산출	112
6. 개선방안 도출	113

제2절 정책 제언	114
1. 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화 추구	114
2.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홍보 강화	115

| 표 차례 |

<표 2-1> 총정원과 표준정원의 모형 비교	10
<표 2-2> 표준화지수(SI) 예시	11
<표 2-3> 자치단체 유형	12
<표 2-4> 행정기능별 주요 변수 예시	13
<표 2-5> 공공부문 인력규모 관련 기존연구	16
<표 3-1> 등록제와 신고제 비교	19
<표 3-2>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 전·후 비교	20
<표 3-3> 신규등록 관련 구비서류 및 관련기관	22
<표 3-4> 변경등록 관련 구비서류	23
<표 3-5> 이전등록 관련 구비서류	25
<표 3-6> 저당설정등록 관련 구비서류	28
<표 3-7> 자동차 등록대수 및 증감율 (1996~2016)	30
<표 3-8>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시 현황(2011년)	32
<표 3-9> 경기도 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2010~2017.07)	34
<표 3-10> 수원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2011~2017.07)	36
<표 3-11> 수원시 행정구별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2011~2017.07)	37
<표 4-1> 등록1, 2팀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2017.01~2017.09)	44
<표 4-2> 북수원민원센터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2017.01~2017.09)	45
<표 4-3>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2017.01~2017.09)	46
<표 4-4> 1인당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2017.01~2017.09)	47
<표 4-5> 1인당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업무시간	48
<표 4-6> 용인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52
<표 4-7> 성남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53
<표 4-8> 안산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55
<표 4-9> 화성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56
<표 4-10> 안양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58
<표 4-11> 평택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59
<표 4-12> 오산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61
<표 4-13> 의왕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62

<표 4-14> 군포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64
<표 4-15> 자동차등록조직 운영형태 비교분석결과	65
<표 4-16> 지역별 차량등록업무 담당인력현황 및 1인당 민원처리건수	66
<표 4-17>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현황	68
<표 4-18> 1인당 평균 차량등록 업무처리량	69
<표 4-19> 지역별 자동차 1대당 인구수 (2016년 기준)	70
<표 4-20> 시나리오별 인구예측 비교	71
<표 4-21> 시나리오별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	72
<표 4-22>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합리적 시나리오)	74
<표 4-23> 수원시 민원서류처리 건수 (2013년)	75
<표 4-24> 수원시 민원서류처리 건수 (2014년)	76
<표 4-25> 수원시 민원서류처리 건수 (2015년)	76
<표 5-1>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수수료	97
<표 6-1> 수원 및 인근지역의 자동차등록업무량 비교	108

| 그림 차례 |

<그림 2-1> 차량등록사업소, 복수원 민원센터 개소(2014.5.7.)	2
<그림 2-2> 수원자동차복합단지 조감도	2
<그림 2-3> 연구 프레임워크	4
<그림 3-1> 신규등록절차	21
<그림 3-2> 변경등록절차	23
<그림 3-3> 이전등록절차	24
<그림 3-4> 말소등록절차	26
<그림 3-5> 저당권등록절차	28
<그림 3-6> 자동차 등록대수(1966~2016)	29
<그림 3-7> 노후차 교체 관련 기사(2009년)	31
<그림 3-8>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효과(2016년)	33
<그림 4-1>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조직현황(2017년)	40
<그림 4-2> 과거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조직도(2016년)	40
<그림 4-3> 차량등록업무 현황 비교지역 설정	50
<그림 4-4> 용인시 자동차등록 조직	51
<그림 4-5> 성남시 자동차등록조직	53
<그림 4-6> 안산시 자동차등록조직	54
<그림 4-7> 화성시 자동차등록조직	56
<그림 4-8> 안양시 자동차등록조직	57
<그림 4-9> 평택시 자동차등록조직	59
<그림 4-10> 오산시 자동차등록조직	60
<그림 4-11> 의왕시 자동차등록조직	61
<그림 4-12> 군포시 자동차등록조직	63
<그림 4-13> 지역별 자동차등록대수 변화추이	67
<그림 4-14> 시나리오별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 결과	73
<그림 4-15>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합리적 시나리오)	73
<그림 4-16> 수원시 자동차등록 관련 개선방향	79
<그림 5-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10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10년 12월 1일, 전국자동차등록제 실시
 - 행정자치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자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밝힘
 -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절차를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하도록 변경
 - 자동차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역시 등록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됨
 - 관할 등록 관청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 전국자동차등록제 실시 이후, 수원 등 대도시 자동차 등록민원 폭주
 - 전국자동차등록제 실시 이후 수원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은 자동차 등록 민원 폭주
 - 2017년 3월 현재 1일 평균 9,030건의 민원처리(1인당 하루 311건 처리)
 - 2016년 관외분 처리 비중은 신규 64.0%, 이전 52.3%, 말소 55.6%로 관내분 비중보다 높음
 - 인근 지자체와 비교한 2016년 자동차 민원처리 통계를 살펴보면 수원시(216만대)는 성남시(111만대), 고양시(126만대), 용인시(120만대), 화성시(86만대)보다 평균 2.0배 많은 수치의 민원을 처리
 - 2013년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등록차량은 총 41만 여대로, 1일 평균 7,2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수치
 - 이에 수원시는 2014.5.7.자로 장안구청 1층에 차량등록사업소 북수원민원센터를 개소¹⁾하는 등 업무폭주에 대응함

1) “차량등록사업소 북수원 민원센터 개소”, 노컷뉴스(2014.05.07.), <http://www.nocutnews.co.kr/news/4019729>



자료: 수원시청

<그림 2-1> 차량등록사업소, 북수원 민원센터 개소(2014.5.7.)

- 유독 수원시에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가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수원시에는 11개 자동차 매매단지가 소재하여 있으며, 해당 단지에는 198개의 업체와 3,63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며 매일 평균 11,500대를 매매하고 있음
 - 2016년 민원처리 건수는 2013년 대비 126%p 증가
- 향후 수원시에는 도이치 오토월드, 서수원개발 자동차매매센터 등 자동차복합단지가 새롭게 조성되어 500여개 매매상사가 입주 예정임



<그림 2-2> 수원자동차복합단지 조감도

-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은 수원시의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다른 한편으로 자동차 거래량의 증가로 인하여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 자동차 등록 업무는 큰 범위에서 신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업무 외에도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자동차세 부과징수 일할 계산 시행 등도 병행
 - 2016년 2월 12일자로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2(포상금지급) 조항에 따라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민원이 급증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자동차운행정지) 규정에 의거한 위법운행차량 경찰 단속 강화로 인해 이에 수반되는 관련 업무량 증가
- 2017년 1월 1일, 자동차세 수시부과 일할계산 시행으로 인해 차량 이전 등록시 소요인력 추가 필요

2. 연구의 목적

- 전국자동차등록제도가 시행 이후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업무 폭증의 원인 분석 및 향후 민원증가추세 전망
- 기존에 이미 단행되었던 인원 증원과 조직 확대(북수원민원센터 개설) 이외에도 추가조치 필요
 - 1)조직 개편, 2)업무 위탁, 3)자동차 등록 전산시스템 개발 등 자동차 등록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업무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전문가 자문과 현장인력의 설문조사 및 면담과 함께 국내·외 선례에 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함
-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기대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는 전국 전국자동차등록제도 시행 이전(2010년 이전)부터 2017년 현재 까지로 정함

- 내용적 범위
 - 1) 수원시자동차등록 업무 일반현황 및 특수성
 - 2) 국내외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사례조사
 - 3) 자동차등록 관련법규 정비검토
 - 4) 자동차등록업무 개선에 관한 기본구상
 - 5) 자동차등록업무 개선에 관한 타당성 검토
 - 이를 통해 자동차등록업무 개선안을 도출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 연구의 방법



<그림 2-3> 연구 프레임워크

-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현행 법규 검토
- 자동차등록 관련법규 정비 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
- 자동차등록업무 개선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면접 조사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수요 예측 방법의 이론적 고찰

1. 정량적 예측 방법(Quantitative technique)

- 정량적 예측 방법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서 과거의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통계 처리하여 예측에 필요한 경험적 법칙을 추정하는 방법
 - 정량적 예측 방법은 크게 시계열 분석법, 인과관계 분석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시계열 분석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순서대로 관측되는 값을 대상으로 그 추세나 변동요인 등을 파악한 후에, 자료의 패턴을 유추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시계열자료는 장기추세, 계절변동, 순환변동, 불규칙변동 4가지 요소들의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음

1)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 단순이동평균법

- 간단한 시계열자료 분석법의 하나로서, 최근 관측치 몇 개의 단순평균값을 다음 기간의 예측치로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관측치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함

$$F_t = \frac{A_{t-1} + A_{t-2} + \dots + A_{t-N}}{N}$$

F_t = 기간 t의 수요예측치, A_t = 기간 t의 실제수요, N = 이동평균기간

- 단순이동평균법은 과거 극단적인 실측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동평균의 대상 실측값들을 동일 비중으로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이동평균의 대상 기간수를 정하는 데 임의적 요소가 크고, 자료의 불규칙한 요인과 계절요인을 평활화함
 - 이동평균법은 n기의 실제 수요값을 평균한 것으로 n이 너무 작으면 실제 수요를 과다 반영하게 되며, 이동평균법의 예측치는 n기의 과거 실측값이 상승추세일 경우 너무 낮게 설정되고, 하향추세일 때는 너무 높게 설정됨

- N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변동을 잘 평활할 수 있으나, 자료의 실질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음

■ 가중이동평균법

- 가중이동평균법은 관측치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한 이동평균법으로, 과거자료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어 강조할 수 있음
 - 가중이동평균법의 특징은 단순이동평균법에 비해 근본적 평균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임

$$F_t = W_{t-1} \times A_{t-1} + W_{t-2} \times A_{t-2} + \dots + W_{t-N} \times A_{t-N}$$

F_t = 기간 t의 수요예측치, A_t = 기간 t의 실제수요, W_t = 이동평균기간

■ 지수평활법

- 가중치이동평균법의 하나로써 가장 최근 자료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중치가 기하학적으로 감소되는 기법으로 자료들이 시간의 지수함수에 따라 가중치를 가지므로 지수평활법이라 함
 - 가중치이동평균법은 어떤 추세를 갖지 않거나, 계절적 패턴을 나타내는 데이터 또는 추세와 계절적 패턴을 지니는 자료에 활용될 수 있음

$$F_t = \alpha A_{t-1} + (1-\alpha)F_{t-1}$$

α = 평활상수($0 \leq \alpha \leq 1$)

2) 인과관계 분석(Causal-Forecasting Model)

- 인과관계 분석법은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와 수요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함
 - 회귀분석, 계량경제모형, 투입·산출모형, 및 시뮬레이션 등이 인과관계 분석법의 범주에 들어있으며, 주로 중·장기 예측에 활용됨
 - 인과관계 분석법 중, 회귀분석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 단순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구분되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에 따라 선형 회귀분석과 비선형회귀분석으로 나뉨

2. 정성적 예측 방법(Qualitative technique)

- 정성적 예측 방법은 전문가의 주관이나 판단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예측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유용하게 활용됨
 - 수행 과정과 방법에 따라 델파이, 시장조사, 패널동의, 역사적 유추 등의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며, 주로 중·장기 예측에 이용됨

1) 델파이법(Delphi Method)

- 델파이법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한 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조사하여 예측치를 구하는 방법
 - 예측에 불확실성이 크거나, 과거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이 기법은 설비계획이나 신제품 개발, 시장전략 수립 등을 위한 장기예측이나 기술 예측에 적합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2) 시장조사법(Market Research)

- 시장조사법은 설문조사나 인터뷰, 전화조사, 시제품 방송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 시장조사법은 정성적 예측 방법 중에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나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음

3) 패널동의법(Panel Consensus)

- 패널동의법은 특정 개인보다 다수의 의견이 보다 정확성이 큰 예측치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경영자나 판매원, 소비자 등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 예측값을 도출하는 방법

4) 역사적 유추법(Historical Analogy)

- 역사적 유추법은 신제품과 같이 과거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와 유사한 기존 제품이 과거에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였으며, 도입·성장·성숙기를 거치며 수요가 성장했는가를 참고하여 신제품의 수요를 유추하는 방법

제2절 자치단체 정원산정 제도변화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원산정 제도변화

1) 총액인건비제도 실시 이전

(1) 기준정원(1988년 4월 ~ 1994년 12월)

- 1988년 이전 정부승인제로 운영되었으나, 1988년 기준정원제가 실시되었는데, 기준정원제는 최초의 정원모형 설계·적용 사례로서, 자치단체 유형을 직할시와 도, 시, 군, 자치구 각 5개 유형을 분류함

(2) 총정원(1995년 1월 ~ 1996년 12월)

- 총정원모형은 인구나 면적, 기관수 등을 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으며, 자치단체 유형으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도, 자치구, 시, 군로 나누고, 시와 군은 각 5개 유형으로 분류함

(3) 표준정원(1997년 4월 ~ 2006년 12월)

■ 표준정원제 실시

- 1997년 도입된 표준정원제는 기존의 회귀분석모형을 수정하여 다른 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인원을 산출해내는 거시 모형 기반의 가변수모형(LSDV, Least Squares Dummy Variable Model)을 활용하였음

<표 2-1> 총정원과 표준정원의 모형 비교

내용	총정원모형	표준정원모형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귀방정식 : 최소자승법 모형 (OLS, Ordinary Least Squa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귀방정식 : 횡단면시계열분석에 의한 고정효과모형 (LSDV, Least Squares Dummy Variable Mode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1989년 ~ 1995년)
설명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수 ◆ 면적(군) ◆ 기관수(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수 ◆ 횡단면고정효과 ◆ 시계열고정효과(도·자치구·군) ◆ 1차 산하기관수(서울시) ◆ 읍면동수(자치구·시·도농복합시·군) ◆ 면적(도농복합형태의 시·군)

자료 : 신원부·전봉기(2010)

-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로 분류하고, 추정된 표준정원에 자치단체분류에 따라 일정률을 가산한 보정정원을 산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표준정원방식의 개선(1999년)
 - 기존의 가변수모형이 지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수요의 크기만을 고려한 인력산정 모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지수(SI, Standardized Index)를 활용하여 표준정원방식을 개선·적용함
 - 표준화지수는 공무원 정원 규모가 기본변수의 크기가 유사할지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 동일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한 자치단체가 불리한 만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더 조정 받게 하는 방법임

〈표 2-2〉 표준화지수(SI) 예시

자치단체	현정원	기본정원	표준화지수	표준정원
A (유리한 지역적 여건)	450	500	0.9	450
B (평균적인 지역적 여건)	500	500	1.0	500
D (불리한 지역적 여건)	550	500	1.1	550

자료 : 신원부·전봉기(2010)

- 표준정원제 재시행(2003년)
 - IMF 경제위기로 인해 표준정원제의 시행이 중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나, 경제위기가 일단락되면서 2003년 표준정원제가 부활하게 됨
 - 표준정원모형의 주요 변수로 인구, 면적, 산하기관수, 결산액 등 4개 기본변수와 특성변수 14개(해안선길이, 관광객 수, 작후지역면적 등), 총 18개 변수를 사용

$$W(\text{표준정원}) = \text{기본모형}(Y) \times \text{비용모형}(X)$$

$$\text{기본모형}(Y) = [f(\text{인구}) + f(\text{인구, 면적, 기관수, 결산액})] / 2$$

$$\text{비용모형}(X) = f(\text{표준화지수}) \times \text{재정력지수}$$

※ 경기도의 경우, $EXP[2.8245 + (0.31244 \times \ln \text{인구수}) \times \text{표준화지수}(0.93614)]$ 로 산정

- 특히, 일정기준에 따른 인력관리를 통해 조직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으며,
- 급격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점진적인 규모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율에 따른 단계적 감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4)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2005, 2006년)

- 자율결정시스템에 따른 지방조직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2005년 1단계 총액인건비 시범 사업(자치단체 10개)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2단계 시범사업(자치단체 9개)을 통해 총액 인건비제도 전면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2) 총액인건비제 실시 이후

- 2007년 1월 1일 본격 실시된 총액인건비제도의 정원모델은 행정수요 반영과 보정을 기본으로 자치단체 정원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행정수요 반영 : 자치단체 유형화, 행정기능 분류
 - 보정 : 지역여건 반영, 인력운영 현실방영
- 첫째, 자치단체 유형의 경우, 자치단체별 종류와 인구 수, 행정여건, 특성 등에 따라 담당사무의 종류와 사무 수, 처리량의 상이함과 기존 기구정원규정상 행정기구 설치·정원 기준을 참고하여 총 10개 유형으로 분류함

<표 2-3> 자치단체 유형

계층		유형
시, 도	16개	①특별시(1), ②광역시(6), ③경기도(1), ④도(7)
시, 군, 구	230개	⑤50만 이상시(12), ⑥50만 미만시(26), ⑦도농통합시(37), ⑧군(86), ⑨특별시 자치구(25), ⑩광역시 자치구(44)

자료 : 신원부·전봉기(2010)

- 둘째, 행정기능 분류는 자치단체의 기능별 행정수요에 따라 적정 인력규모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중기능(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등) 11개와 소기능 52개로 구분됨
 - 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종합행정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환경 또는 여건 등에 따라 행정수요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능 간에 비중에 따라 기능별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 인력규모를 설정

- 셋째, 행정기능별 정원산정에 필요한 변수들은 기본변수와 특성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정원 산정은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10개 유형과 행정기능 11개 유형들을 조합하여 총 110개의 산식을 개발하였음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기능 공무원의 경우, ‘ $80.96122 + 7.91E-07 \times (\text{문화시설면적} + \text{체육시설면적}) + 7.56E-05 \times \text{문화체육관광비}$ ’ 로 1차 계산하여 정원을 산정하고 행정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2차 보정을 실시함

<표 2-4> 행정기능별 주요 변수 예시

기능	기본변수	특성변수	기준재정수요액
문화, 체육, 관광	인구	문화시설, 체육시설면적, 관광지 면적, 문화재수	문화체육비 홍보비 관광진흥비
보건복지	면적 산하기관수 가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노령인구수, 등록장애인수, 사회복지시설면적, 노인복지시설면적, 사회복지시설수(개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원(명), 경로당수(개소), 보건시설면적, 무료예방접종인원(명)	사회복지비 노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 보건위생비

자료 : 신원부·전봉기(2010)

2. 선행연구 검토

- 공공부문 정원산정에 관한 선행연구 경향
 - 공공부문 인력규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력규모 팽창의 원인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Baumol(1981), Parkinson(1957), Niskanen(1971) 등이 있음
 - W. Baumol(1981)은 생산성 성장과 비성장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인력규모 팽창의 원인을 분석하였음
 - 성장부문과 비성장부문 간의 임금이 동일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성장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임금인상을 억제하지만 비성장부문의 경우 이러한 상쇄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임금인상 모두가 추가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됨
 - 따라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이 비성장 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력규모가 팽창하게 된다는 것이 Baumol의 주장임
 - Parkinson(1957)은 공무원 인력규모의 증가 원인을 부하배증 원칙과 업무배증의 원칙에 두고 공무원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함

- (부하배증의 원칙) 공무원은 업무량이 과하게 증가하게 되면 동료 공무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업무를 재분배하기 보다는 부하직원을 늘려 업무 경감을 꾀함
- 동료 공무원의 증가는 곧 자신의 경쟁상대가 늘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피함
- (업무배증의 원칙) 부하배증의 원칙에 따라 부하직원이 늘어나게 되면 조직내부에 지시, 통제, 업무보고 등의 업무가 파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더 증가하게 되어 조직규모가 증가하게 됨
- Niskanen(1971)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예산극대화모형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무원의 행태가 공공부문의 인력규모 과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규모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의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는 지자체 규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지자체 행정기능에 따른 공무원 수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한 수준임
 - 지자체 표준공무원 수 관련 연구는 주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개발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1988, 1990년에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개발모형을 마련하였음
 - 김신복(1980)은 공무원에 대한 수요의 총량과 기관별 적정인원을 추정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한 공무원 수요의 총량규모 추정을 시도하였음
 - 공무원 직급별 추계의 경우, 구성비 추세분석과 유동성모형에 의한 방법을 제시함
 - 공무원 적정인원 산정은 업무대상지표와 업무단위 선정을 통해 공무원 수 증감과 연결하는 거시적 기법과 실제 업무량 산출을 토대로 소요인원을 추정하는 미시적 기법을 병행하였음
 - 또한 공무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업무량과 행정양태, 정부재정, 공무원의 질, GNP, 재정규모, 취업자 수 등을 활용하였음
 - 강성철(1988)은 부산광역시 북구와 금정구 사례를 토대로 자치구의 도시특성과 기능, 재정수요 등을 주요변수로 설정하고, 자치구의 정원산정방식을 개발하였음
 - 부산광역시 분과와 금정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에 따라 변수를 선택하게 하고 선택된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선별하였음
 -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는 문화재수, 인구 밀도, 공해배출업소 수, 쓰레기 배출량, 건축 관련 민원업무량, 지적공부열람건수, 연간 민원처리건수, 주요 예방접종횟수 및 보건소 연간 치료 인원수, 도로포장면적, 건축허가면적, 행정동 수 등이었음

- 손재식(1993)은 지자체 정원산정 방식을 총괄정원모형과 업무분야별 정원모형, 부서별 정원모형으로 분류하고, 각 지자체 수준에 따른 정원모형별 정원산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음
 - 총괄정원모형에서 제시하는 지표는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와 시군 수, 민원처리건 수, 가구 수, 공해배출업소 수 등이며,
 - 시의 경우에는 인구, 동 수, 민원처리건수, 세출결산액 등이었으며, 군은 인구와 차량 등록대수, 사업계획승인건수, 건축허가 면적 등이었음
- 이은국(1995)은 한국, 일본, 미국 공무원 인력의 팽창원인을 인구변수에 두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 수가 총인구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함
 - 특히, 우리나라의 35개시를 대상으로 공무원 인력팽창과 규모 최적화 방안을 검토 하여 국가공무원의 경우 증가추세가 과잉인력이론에 부합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은 증가추세가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김태일(2000)은 우리나라의 인구별 공무원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국방인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 기준에서 인구 1,000명 당 약 22명인 것으로 분석함
 - 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공무원 규모는 19명이었으나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공무원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주장함
- 김태일·장덕희(2006)는 보건·복지·치안·교육·기타의 5개 세부분류에 대한 공무원 규모를 분석하고, 보건복지 부문의 공무원 규모가 다른 부문에 비해 작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은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지방의 행정기능·인력 적정화 방안 연구에서 전국 지자체를 11개로 구분하고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지자체의 표준인력규모를 분석하였음
- 하태수(2007)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정부규모가 커졌으며, 정부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화 시작 전인 1981~1987년 사이의 일로 정부의 경제개입 축소보다는 국방비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신원부·원구환(2008)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공무원 정원증가 추세를 분석하여 각 지자체별 인력규모의 증가속도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및 보건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신원부·전봉기(2010)은 지방자치단체 정원산정모델인 총액인건비제도를 재점검하고

경기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원산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패널분석방식에 따른 고정효과모델과 확률효과모델, 그리고 두 가지 모델의 혼합효과모델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정원산정 모델을 제시함

<표 2-5> 공공부문 인력규모 관련 기존연구

분류	유형	내용
전체정부 공무원 규모 연구	국가와 지방 비교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은국(1995) : 과잉원인이론 및 정부규모분석
	OECD 비교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태일(2000) : 국방인력을 제외한 비교(1인당 GDP와 인구 천명당 공무원 규모 연구) • 김태일·장덕희(2006) : 보건, 복지, 치안, 교육 및 기타로 세분화 비교(인구 및 1인당 GDP, 인구 천명당 공무원 규모 연구) • 하태수(2007) : 세계화 이후 오히려 정부규모 확대, 1980년대 감소, 이유는 국방비 감소인 것으로 나타남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신복(1980) : 업무량, 행정양태, 공무원의 질, 정부재정, GNP, 재정규모, 취업자 수 등을 변수로 하여 규모산정 실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 연구	개별 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응수(1991) : 도시자치단체 부문별 적정정원모형 제시 • 손재식(1993) : 시군대상이 정원산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제시 • 이혁주(1995) : 서울시 중구, 은평구의 부서별 인력규모 산정 • 이은국(1996) : 과잉원인이론을 토대로 시공무원 인력규모분석 • 박재완(2000) : 정원을 종속변수가 아닌 적정인원을 대표하는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 • 김대건(2005) : 행정수요분석을 통한 동작구 인력규모 연구 • 원구환·신원부(2007) : 75개시를 대상으로 산업경제 담당인력 증감 분석 • 김광주 외(2008) : 8개 지자체 면담을 통해 인력증가원인 고찰
	전국 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8, 1990) : 지방공무원 정원 개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 인력적정성 분석을 위해 주요지표로 인구, 면적, 기능별 기준, 재정 수요액, 산하기관수 등 30개 지표 • 신원부·원구환(2008) : 11개 행정기능별 인력증대분야 제시 • 신원부·전봉기(2010) : 지자체 합리적 정원산정모델 마련을 위해 면담, 설문조사, 회귀분석 등을 통해 정원을 재산정함

제3장 자동차등록제 및 관련 업무 현황

제1절 자동차등록제도 개관

1. 자동차등록제의 의의

- 자동차등록은 자동차 운행의 가장 기본요건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만 운행할 수 있음을 명시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됨을 규정(법 제6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함
 -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원동기 형식 및 차종과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 저장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기재 필요(법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함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등록을 통해 개별 자동차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차량식별이 가능하게 되고, 보유실태 점검 및 자동차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의 행정적 기능 지님(전형문, 1991)
 - 이외에도 자동차등록시 부과되는 취·등록세와 각종 수수료 등은 국가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며,
 - 자동차등록을 통해 그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 거래 및 저당권 설정 등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재산권보호 기능 확보

2. 자동차등록제 적용범위

-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대상으로 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여 등록을 의무화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됨
 -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상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해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
 - 자동차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업기계, 의료기기 등에 대한 권리의 득실은 일반 동산과 같이 인도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나, 군수품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필요(「군수품관리법」 제14조, 제15조)
 -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소유권 변동시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접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 * 건설기계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와 같이 등록원부 기재에 따라 이뤄짐
 -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적재용량 12톤 이상 덤프트럭, 기중기 등이 건설기계에 해당하나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경우 화물운송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건설기계가 아닌 자동차에 해당함
-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 1일 법규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역시 지역무관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함

- 과거 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배기량 50cc(0.59kW)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미신고·무보험 이륜자동차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신고대상으로 확대·적용됨

〈표 3-1〉 등록제와 신고제 비교

구분	등록제	신고제
근거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조)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48조)
관할관청	♦ 시·도지사(법 제8조)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 시장·군수·구청장(법 제48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
대상	♦ 등록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모든 자동차(제5조)	♦ 배기량 50cc(정격출력 0.59kW) 이상인 이륜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절차	♦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시행규칙 제99조)
의무부과	♦ 자동차관리법상 정기 검사대상에 해당(법 제43조)	♦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법 제5조)
저당권	♦ 저당권 등록 가능(자동차등록특정등산저당법 제3조)	♦ 저당권 등록에 대한 제도 없음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2)

3. 전국자동차등록제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전국자동차등록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기존의 자동차 등록업무는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 외에, 같은 시·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여 시·도를 달리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야기
 -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을 통해 지역과 관계없이 등록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됨

* 자동차 전국등록으로 연간 3,344억 원의 국민부담 경감효과 기대(국토해양부, 2010)

- 또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전국 시·도 간 변경등록 업무의 경우에도 신규 등록원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기존의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표 3-2>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 전·후 비교

전국자동차등록제(2010.12.1.) 시행 이전	전국자동차등록제(2010.12.1.) 시행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사용본거지만 등록 가능 • 허가 등록관청에서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가능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00원, 발급 300원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신규 등록 시, 타 시·도 등록 가능 •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가능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무료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600원 •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www.ecar.go.kr) 등록 업무 가능

-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이륜자동차의 등록에도 지역 무관 서비스를 적용·실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²⁾으로 그동안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했던 이륜차의 등록·폐지 업무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재발급의 경우에는 번호판의 단순 훼손 및 교체일 때에는 기존의 번호판을 부착한 시군구청에서만 가능하며, 멸실·도난·분실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사용본거지에서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음

제2절 자동차등록 업무 현황

1. 자동차등록 업무 구성

- 자동차등록업무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 총 8가지로 구분됨

2) 이륜자동차의 지역무관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륜자동차 번호판 신규발급) 사용신고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의 표시가 있는 번호판 발급
-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①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해당 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 ② 멸실·분실·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한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

1) 신규등록

- 신규등록은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림 3-1> 신규등록절차

<표 3-3> 신규등록 관련 구비서류 및 관련기관

구분	구비서류	관련기관
기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신청서(방문작성)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보험가입(전산 확인) ◆ 신분증(소유자 본인 방문 시)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발급자에 한함) 	등록관청 제조사 제조사 보험사 자동차소유자 임시운행 허가관청
대리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방문 작성) - 개인 : 소유자 도장날인, 신분증(소유자, 대리인) - 법인 : 법인 인감날인 	등록관청
공동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소유자 명단(방문 작성) - 지분율이 같을 경우 : 신분증, 도장날인 - 지분율이 다를 경우 :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날인 	등록관청
개인사업자 및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법인) 	세무서, 등기소
감면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확인원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 주민센터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 3,000원, ◆ 증지 : 2,000원(경기도외 2,500원) ◆ 번호판 : 일반형 : 14,000원 (번호판 12,000원, 탈부착 2,000원) 대 형 : 16,000원 (번호판 14,000원, 탈부착 2,000원) 	등록관청

자료: 도로교통관리사업소(2017)

2) 변경등록

-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 신청에 의한 등록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제25조(시도간의 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림 3-2> 변경등록절차

<표 3-4> 변경등록 관련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기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법인 상호변경은 등록면허세 부과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도장날인) 변경기간 30일 이상 경과 과태료
용도변경 (영업용 ▶ 자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폐차신고필증 • LPG자동차 : 장애인증 	영업용자동차 일반인매매 불가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 후 일반인 이전 가능
용도변경 (자가용 ▶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폐차신고필증 	사용본거지 동일시도내 처리 영업용 번호 부여 시 수원만 가능
등록번호 변경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번호판 반납 	이전등록시 60일 이내 신청 분실시 분실확인서 첨부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지 : 1,3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자료: 도로교통관리사업소(2017)

3) 이전등록

- 자동차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등록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이전등록 신청),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림 3-3> 이전등록절차

〈표 3-5〉 이전등록 관련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기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전산확인) ◆ 신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p>위임시 도장 및 인감증명서첨부 2011.7.6.이후 압류 해지 후 이전 지방세 압류 시 이전 불가 이전기간 15일 이상 경과 범칙금</p>
미성년자 이전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p>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p>
단체, 사단 이전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 ◆ 대표자인감증명서, 직인 ◆ 정관, 규약, 회의록 	<p>주소는 고유번호증 주소로 입력 주민(법인)번호는 대표자 번호 성명은 단체명(대표자명) 기재</p>
상속이전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차량상속포기각서 ◆ 차량상속포기자 신분증 	<p>상속포기자 행불시 공증증서 첨부 공동소유자 사망시 지분율만 상속 LPG자동차 일반인 상속 가능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이전 불가)</p>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 3,000원, ◆ 증지 : 1,000원(경기도내), 1,500원(경기도외) 	<p>취득세 및 공채는 용도, 차종, 배기량, 등록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p>

자료: 도로교통관리사업소(2017)

4) 말소등록

-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등록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32조(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중략) ...
-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3.18.>
- ⑪ 시·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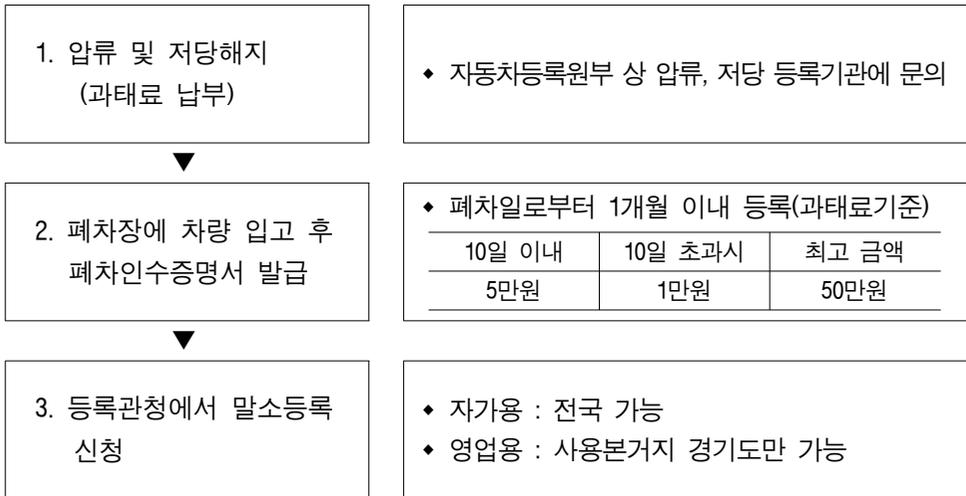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림 3-4> 말소등록절차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말소등록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 / 폐차인수증명서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대리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도장날인) / 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 말소증명서 1,100원

○ 폐차말소절차



5) 압류등록

- 법원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 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6) 저당권등록

- 저당권설정을 위한 민법상 약정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



<그림 3-5> 저당권등록절차

<표 3-6> 저당설정등록 관련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저당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인감날인) : 직접 방문시 서명가능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소유자 인감날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법인)) ※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1부 추가
저당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인감날인) ◆ 채권자 인감증명서 (필수)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채권자 인감날인)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세 : 설정금액의 0.2%(750만원 이하), 말소 15,000원 ◆ 증지대 : 설정금액의 0.4%, 말소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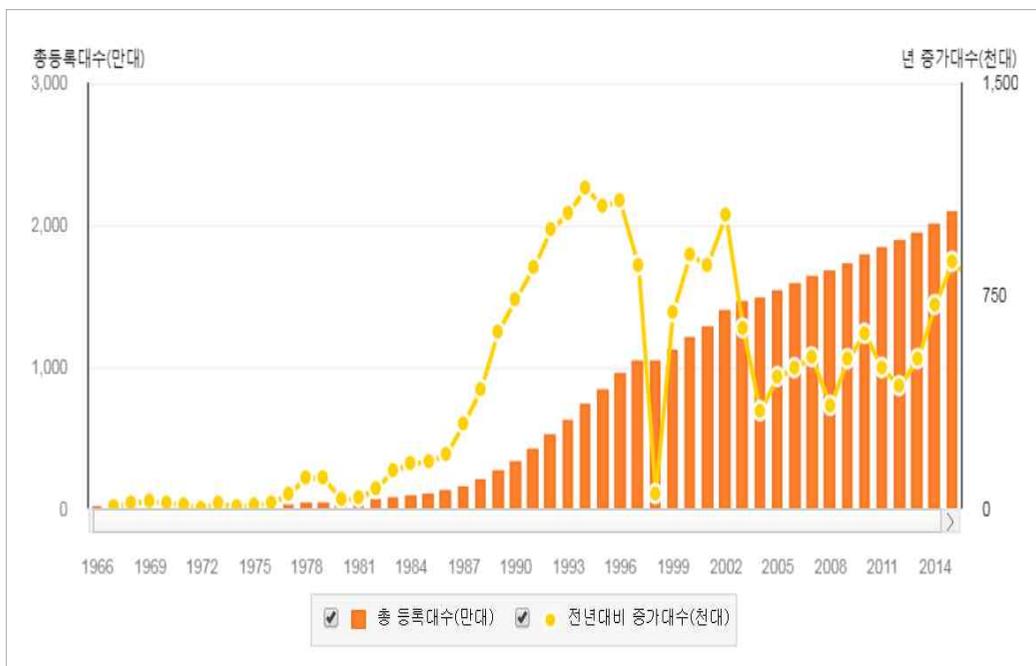
자료: 도로교통관리사업소(2017)

2. 전국 및 수원의 자동차등록 현황

1) 전국 자동차등록 현황³⁾

■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1960년대 후반 10만 수준에 불과하던 자동차등록대수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누적 등록대수 2,180만대에 달함
 - 2016년 기준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2,016만대(92.5%)이며, 수입차는 164만대(7.5%)로 수입차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기준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7명이고,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421.8명으로 전체 인구의 42.1%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대 초 천만대 이상 증가하던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감비가 IMF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다시금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부터 다시 감소한 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그림 3-6> 자동차 등록대수(1966~2016)

3)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표 3-7> 자동차 등록대수 및 증감율 (1996-2016)

연도	등록대수 (만대)	전년대비 증가대수 ^{주1)} (천대)	전년대비 증감비 ^{주2)} (%)	연도	등록대수 (만대)	전년대비 증가대수 (천대)	전년대비 증감비 (%)
1966	5	-	-	1992	523	983	23.1
1967	6	10	20.8	1993	627	1,043	19.9
1968	8	20	33.6	1994	740	1,130	18.0
1969	11	27	34.8	1995	847	1,065	14.4
1970	13	20	19.2	1996	955	1,084	12.8
1971	14	14	10.9	1997	1,041	860	9.0
1972	15	5	3.8	1998	1,047	56	0.5
1973	17	20	13.5	1999	1,116	694	6.6
1974	18	12	7.4	2000	1,206	896	8.0
1975	19	16	9.3	2001	1,291	855	7.1
1976	22	25	12.9	2002	1,395	1,035	8.0
1977	28	56	25.7	2003	1,459	637	4.6
1978	38	109	39.7	2004	1,493	347	2.4
1979	49	110	28.6	2005	1,540	463	3.1
1980	53	33	6.7	2006	1,590	499	3.2
1981	57	44	8.3	2007	1,643	533	3.4
1982	65	75	13.2	2008	1,679	366	2.2
1983	79	138	21.4	2009	1,733	531	3.2
1984	95	163	20.8	2010	1,794	616	3.6
1985	111	165	17.4	2011	1,844	496	2.8
1986	131	196	17.6	2012	1,887	433	2.3
1987	161	302	23.1	2013	1,940	530	2.8
1988	204	424	26.3	2014	2,012	717	3.7
1989	266	625	30.7	2015	2,099	871	4.3
1990	339	735	27.6	2016	2,180	813	3.9
1991	425	853	25.1				

주1) 증가대수 :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차이로, 해당년도의 신규등록대수가 아님

주2) 증감비 :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증감율로 자동차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대수가 같거나 증가하더라도 증감비는 작아질 수 있음

자료 : 국토교통부

■ 기간별 자동차등록대수 증감 추이 및 변동요인

- (2002~2004년 감소) IMF외환위기 이후 가장 저조하였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소비 지출의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고유가로 인한 구매심리 위축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05~2007년 증가) 내수회복으로 인하여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며, 기존 보유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 수요발생 및 신차 발표효과가 반영됨
- (2008년 감소)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산 가치 하락, 가계부채 증가 및 고용불안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자동차할부금융 경색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⁴⁾
- (2009년 증가) 정부의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증가
 - 정부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된 노후 차량을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함으로써, 당시 정부의 세수 감소규모가 3,100억 원에 달함(조선일보, 2012년 9월 11일자 참조)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 등 추진원칙 논의](#) 아시아경제 | 2009.03.26. | 네이버뉴스 | [🔗](#)

이번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 할부판매 활성화 등 자동차 내수활성화 지원확대와 ▲자동차 부품산업 경영여건 및 경쟁력 제고 ▲그린카 등 미래 경쟁력 위한 R&D지원 확대 등 크게 3분야로...

[정부,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결정\(1보\)](#) 이데일리 | 2009.03.26. | 네이버뉴스 | [🔗](#)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정부,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 파이낸셜뉴스 | 2009.03.26. | 네이버뉴스 | [🔗](#)

정부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과 할부판매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기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추진](#) 머니투데이 | 2009.03.26. | 네이버뉴스 | [🔗](#)

정부는 이날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할부판매 활성화 등 자동차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여건 및 경쟁력 제고 △그린카 등 미래 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 노후차 교체 세금감면 논의](#) 연합뉴스 | 2009.03.26. | 네이버뉴스 | [🔗](#)

정부는 유럽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구입 또는 폐차 보조금 대신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자동차에 붙는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자동차업계는 보조금보다 세금 감면이 자동차...

[자동차산업 지원..노후차 바꾸면 세금감면 검토\[재정부\]](#)

연합인포맥스 | 2009.03.26. | 네이버뉴스 | [🔗](#)

노후차를 교체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명박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이같이...

[정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뉴시스 | 2009.03.26. | 네이버뉴스 | [🔗](#)

이날 회의에의 논의는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할부판매 활성화 등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여건 및 경쟁력 제고 ▲그린카 등 미래 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그림 3-7> 노후차 교체 관련 기사(2009년)

4)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4/4분기 산업동향 및 2009년 1/4분기 전망, 이슈페이퍼, 2008

- (2010년 증가)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신차 출시 및 마케팅 효과 등으로 자동차등록대수가 증가함
- (2011년 증가) 신규 자동차등록대수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며 말소 및 이전등록 또한 대폭 증가함
 - 신규등록의 증가는 잠재대체수요 확대와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시, 신규 브랜드 도입 등의 효과로 증가하였으나 4분기부터 유럽재정위기 확산 등의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표 3-8〉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시 현황(2011년)



- (2012년 증가) 신규등록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3.1%가 감소하였으나, 2012년 9월 내수경기부양책인 개별소비세 인하와 제작사의 추가 할인 등의 마케팅 효과로 전년대비 433만대 증가함
 - 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201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개별소비세를 1.5% 인하해줌⁵⁾
 -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정부의 세수 감소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당시 내수 진작 효과는 6,700억 원에 달함(동아일보, 2015년 8월 27일자 참조)
- (2013년 증가) 신규등록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으나, 말소등록이 자동차의 내구성 향상과 차량 교체를 지연시켜 전년대비 7.8% 감소한 것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보임
- (2014년 증가) 다양한 신차 출시 및 디젤 연료에 대한 선호 등으로 신규등록이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으며, 말소등록은 2013년과 같은 이유로 전년대비 6.7% 감소

5) 김승식,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끌리는책, 2013.

- (2015년 증가) 새로운 자동차 모델의 출시와 수입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및 안정적인 유가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 (2016년 증가) 다양한 신규차량의 출시와 내수 진작을 위해 2016년 6월말까지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신규 자동차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정부는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감면하는 내용의 1분기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아반떼는 29만~40만원, 프라이드 22만~32만원, 쏘나타 41만~58만원, 투싼 43만~53만원, 그랜저의 경우 55만~70만원 가량 싸게 살 수 있음.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 원 이상 혜택을 보게 됨

 **차종별 세금 인하효과 (단위: 만원)**

	개소세 등 인하액*		개소세 등 인하액*
엑센트	24~36	프라이드	22~32
아반떼	29~40	K3	26~44
쏘나타	41~58	K5	41~57
그랜저	55~70	K7 (신형)	55~72
투싼	43~53	스포티지	41~53
싼타페	52~63	쏘렌토	51~62

*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합계액임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 회사별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음

<그림 3-8>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효과(2016년)

■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 2020년경 자동차등록대수는 2,5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자동차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동차정책 수립이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2) 경기도 자동차등록 업무량 현황

■ 경기도 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대수 연평균 증가율(CAGR⁶⁾)은 3.0%로 전국(2.82%)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수원(3.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속 수원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수원 다음으로 경기도 내에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은 지역은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안양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9> 경기도 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2010~2017.07)

내림차순 정렬 / 단위 : 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경기도	4,189,151	4,303,774	4,402,396	4,525,170	4,694,527	4,917,091	5,160,921	5,286,640
수원시	371,335	379,694	394,885	411,685	433,967	455,150	475,847	482,781
용인시	335,615	345,438	353,388	365,148	379,841	395,717	410,302	419,974
고양시	319,687	325,661	328,879	339,309	351,413	368,404	384,526	391,686
성남시	301,703	303,756	306,059	310,097	315,096	322,510	332,798	337,684
부천시	269,420	271,004	272,448	274,537	278,041	282,905	294,966	298,100
안산시	256,358	260,652	263,796	270,076	276,895	284,245	291,524	295,743
화성시	220,067	229,640	236,431	243,463	,255,078	288,458	318,430	337,771
안양시	194,086	194,263	194,775	196,301	198,675	203,504	209,151	211,742
남양주시	190,271	197,696	207,299	217,110	229,990	244,618	256,286	262,489
평택시	174,040	180,933	186,597	193,457	202,727	215,512	228,762	237,217
시흥시	160,208	162,465	163,438	166,516	171,993	180,129	188,788	194,961
파주시	140,569	150,142	156,859	160,946	168,773	179,783	188,998	193,321

6) 연평균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일정기간동안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성장률을 의미하며, 계산식은 $CAGR = (\text{마지막 년도의 값} / \text{최초 년도의 값})^{(1/\text{비교기간})} - 1$ 임

의정부시	125,322	125,958	126,686	129,742	133,326	138,261	144,118	146,150
광주시	112,446	120,632	125,977	132,340	141,345	151,154	162,368	167,288
김포시	99,793	107,634	119,064	129,466	142,598	151,905	163,089	173,909
광명시	95,539	99,812	101,202	102,479	104,313	105,398	106,736	106,504
군포시	89,272	90,145	90,413	91,916	94,648	96,396	98,576	99,624
이천시	84,999	87,503	89,133	91,378	94,288	98,173	103,421	105,837
안성시	76,355	79,679	81,533	83,726	87,019	89,930	94,666	97,192
포천시	74,786	78,201	80,446	81,219	83,316	86,351	89,177	89,381
양주시	74,282	76,070	76,958	77,855	80,700	85,268	88,763	92,619
오산시	66,147	71,719	74,247	78,020	81,415	83,826	88,232	91,356
구리시	60,436	60,564	60,095	59,578	59,806	61,407	65,687	67,434
여주시	54,221	55,273	56,146	57,060	59,278	61,631	63,888	65,389
하남시	53,021	54,062	54,154	54,792	57,840	66,238	83,957	89,782
의왕시	49,511	50,889	52,993	55,219	56,153	57,857	59,083	59,549
양평군	39,209	41,501	43,314	44,865	46,890	50,096	53,393	55,410
동두천시	30,927	32,079	33,155	34,096	35,036	35,661	37,002	37,327
연천군	24,237	24,394	24,918	25,022	25,361	26,229	27,588	28,110
가평군	22,687	23,408	24,351	24,957	25,749	27,063	28,448	29,070
과천시	22,602	22,907	22,757	22,795	22,957	23,312	22,351	21,240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2017)

3)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량 현황

- 수원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경기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큰 편으로,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며 경기도의 약 63.4% 수준임

<표 3-10> 수원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2011~2017.07)

단위 : 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전국	승용	14,136,478	14,577,193	15,078,354	15,747,171	16,561,665	17,338,160	17,884,246
	승합	1,015,391	986,833	970,805	947,012	920,320	892,539	874,143
	화물	3,226,421	3,243,924	3,285,707	3,353,683	3,432,937	3,492,173	3,532,182
	특수	59,083	62,583	65,998	70,089	74,963	80,479	84,740
	계	18,437,373	18,870,533	19,400,864	20,117,955	20,989,885	21,803,351	22,375,311
경기도	승용	39,781,404	40,876,312	42,247,285	43,861,386	45,953,089	48,626,011	29,576,835
	승합	3,115,661	3,021,684	2,986,222	2,934,815	2,874,617	2,795,892	1,601,528
	화물	8,216,197	8,242,987	8,327,530	8,510,714	8,751,646	9,003,193	5,347,531
	특수	115,444	125,455	133,220	140,753	149,418	161,629	102,854
	계	51,228,706	52,266,438	53,694,257	55,447,668	57,728,770	60,586,725	36,628,748
수원시	승용	3,689,744	3,835,031	4,029,187	4,257,189	4,474,542	4,739,861	2,861,818
	승합	263,074	257,754	257,456	255,541	252,139	244,580	139,720
	화물	551,527	549,707	555,507	569,362	579,932	589,045	342,864
	특수	6,894	7,682	8,125	8,767	9,181	10,454	7,123
	계	4,511,239	4,650,174	4,850,275	5,090,859	5,315,794	5,583,940	3,351,525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2017)

- 2017년 7월 기준으로 수원시 각 행정구별로는 장안구가 1,150,454 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권선구(911,016대), 팔달구(761,728대), 영통구(528,327대)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수원시 행정구별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2011~2017.07)

단위 : 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수원시 장안구	승용	1,109,453	1,191,760	1,242,652	1,315,121	1,424,563	1,561,533	953,445
	승합	90,521	90,751	91,578	91,288	93,116	94,275	54,895
	화물	206,171	211,684	215,239	221,732	230,330	238,757	139,050
	특수	3,020	3,387	3,864	4,170	4,350	4,982	3,064
	계	1,409,165	1497582	1553333	1632311	1752359	1899547	1,150,454
수원시 권선구	승용	953,627	1,023,499	1,129,605	1,234,987	1,301,240	1,369,110	827,720
	승합	47,103	46,720	47,735	48,326	46,869	42,930	23,804
	화물	91,161	91,034	92,644	97,420	99,026	99,259	58,203
	특수	1,656	1,661	1,570	1,571	1,674	1,856	1,289
	계	1,093,547	1,162,914	1,271,554	1,382,304	1,448,809	1,513,155	911,016
수원시 팔달구	승용	943,125	944,858	979,458	1,020,929	1,047,719	1,077,324	642,733
	승합	71,595	69,464	69,141	68,196	66,462	63,514	36,264
	화물	137,726	135,891	137,423	138,878	139,908	140,668	81,390
	특수	1,067	1,312	1,331	1,484	1,481	1,723	1,341
	계	1,153,513	1,151,525	1,187,353	1,229,487	1,255,570	1,283,229	761,728
수원시 영통구	승용	683,539	674,914	677,472	686,152	701,020	731,894	437,920
	승합	53,855	50,819	49,002	47,731	45,692	43,861	24,757
	화물	116,469	111,098	110,201	111,332	110,668	110,361	64,221
	특수	1,151	1,322	1,360	1,542	1,676	1,893	1,429
	계	855,014	838,153	838,035	846,757	859,056	888,009	528,327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2017)

3.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량 증가의 원인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7월 기준 수원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전국의 15%, 경기도의 63.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원시에 자동차등록업무가 집중되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수원시 차량등록과의 하루 평균 민원처리는 8,082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업무의 상당수가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업무로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임⁷⁾
 - 2015년의 중고차 이전등록건수가 울산이 84,186건이었으며, 수원은 239,881건이었음
- 수원시에 자동차등록업무가 집중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전국자동차등록제도로 본 제도의 시행 직후, 1일 민원처리량이 7,200여 건에 달하는 등 민원업무가 폭주하였음⁸⁾
- 뿐만 아니라, 수원시시설공단에서 2014년 9월 자동차 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타 지역에 비해 천원에서 팔천원 가량 저렴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민원이 집중되었음⁹⁾
- 수원시의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등록과가 약 200개의 매매상사가 입점해 있는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천 건의 자동차등록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수원역과 인접해 있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찾아오고 있어, 하루 평균 약 900건이 넘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 이뤄지고 있음¹⁰⁾
 - 수원시의 중고차거래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5년에 11만5,281대가 판매되었고 2016년에는 13만8,000여대가 팔린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 매매상사별로도 월평균 판매대수가 58대로 전국 평균인 25대의 두배 수준을 넘음¹¹⁾

7)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업무 과부하..증원시급, 중부일보, 2016년 1월 25일자, 기사링크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no=1042434> 최종방문일 : 2017. 12. 20.

8)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북수원민원센터 개소, 노컷뉴스, 2014년 5월 7일자, 기사링크 : <http://www.nocutnews.co.kr/news/4019729> 최종방문일 : 2017. 12. 18.

9) 수원시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30% 인상, 연합뉴스, 2014년 8월 26일자, 기사링크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8/26/0317000000AKR20140826080800061.HTML> 최종방문일 : 2017. 12. 20

10) 수원시 보도자료 2017년 5월 29일

11) 수원시 보도자료 2016년 12월 12일

제4장 수원시 차량등록 업무 현황

제1절 수원시 자동차등록과 조직 및 인력 현황

1.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연혁 및 직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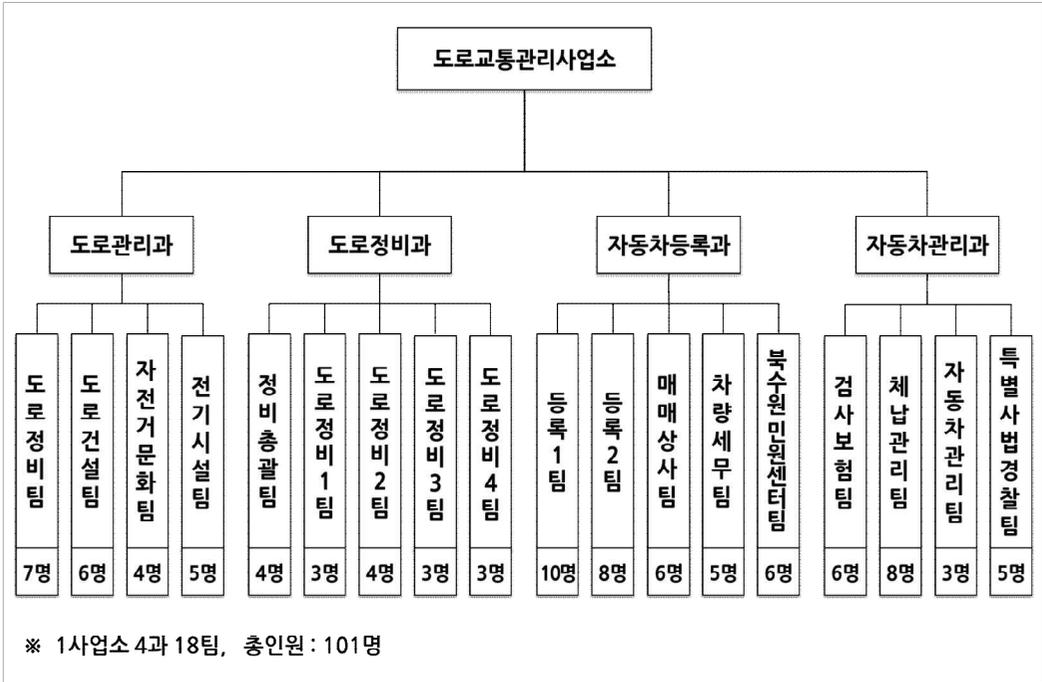
■ 연혁¹²⁾

- 1982년 10월 01일 : 경기도로부터 업무 이관
- 1987년 02월 01일 : 직제개편 (운수과 차량계)
- 1989년 09월 11일 : 직제개편 (시민과 차량등록계)
- 1994년 09월 16일 : 차량등록사업소 직제개편 (조례 및 규칙 공포)
- 1994년 11월 21일 : 권선동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
- 1997년 01월 01일 : 검사계 신설
- 2003년 02월 10일 : 차량세무팀 신설
- 2004년 12월 27일 : 고색동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
- 2007년 09월 03일 : 의무보험팀 신설
- 2011년 11월 14일 : 특별사법경찰팀 신설
- 2014년 02월 24일 : 북수원민원센터팀 신설
- 2015년 02월 24일 : 체납차량팀 신설
- 2017년 01월 02일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직제개편

■ 현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조직 및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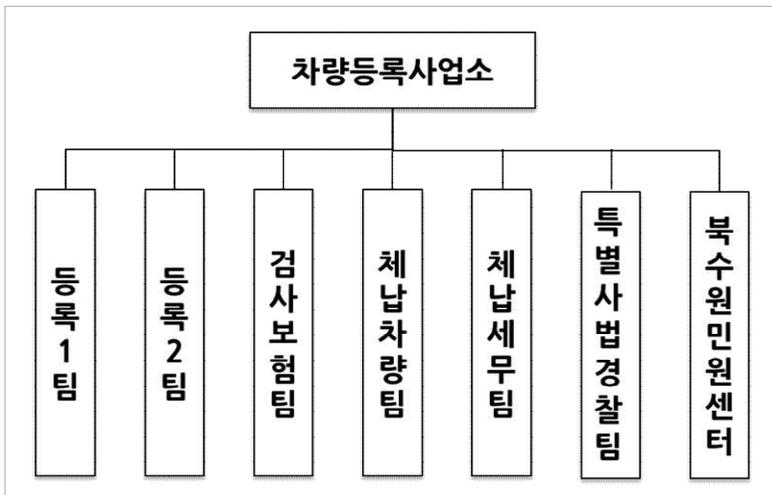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2017년 1월 2일 수원시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차량등록사업소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변경된 것임
 -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안전교통국 내 도로과와 차량등록사업소가 통합되면서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등 4개과 18개 팀으로 구성됨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인원은 사업소장 1명과 도로관리과 23명, 도로정비과 18명, 자동차등록과 36명, 자동차관리과 23명 등 101명임

12) 수원시, 2016 수원시정백서, 2016



<그림 4-1>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조직현황(2017년)

- 2016년 차량등록사업소 조직 및 정원
 - 2017년 1월 2일 직제 개편 전까지 차량등록사업소는 등록 1팀, 등록2팀, 검사보험팀, 체납관리팀, 차량세무팀, 특별사법경찰팀, 복수원민원센터 7팀에 44명이 근무하였음



<그림 4-2> 과거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조직도(2016년)

- 직제개편 이후 기존 차량등록사업소의 팀별 구성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기존 44명에서 46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으나, 검사보협팀과 특별사법경찰팀이 현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관리과로 이전되어 자동차등록과 자체로는 36명으로 줄어들었음
- 2010년 북수원민원센터 개소
 - 북수원민원센터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업무 전환에 따른 민원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5월 장안구청사 1층에 개소
 - 북수원민원센터는 주로 비사업용차량의 신규·변경·이전등록,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취득세 신고접수를 담당하고 있음
 - 2014년 7월말까지 28,000여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수원시민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는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음¹³⁾

2.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업무 현황

- 도로관리과 (4팀, 23명)
 -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팀, 도로행정팀, 자전거문화팀, 전기시설팀 총 4개팀, 총 인원 23명으로 구성됨
 - 도로건설팀은 6명의 인원이 도로의 개설·확장 등 도로건설 업무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도로개설사업 보상 및 도시계획도록 관계토지에 대한 환매권 관련 업무 담당
 - 도로건설업무는 주로 팔달구, 영통구 도시관리계획(도로) 관련 업무협의 또는 도로건설사업 추진공사관련 유관기관 도로계획 협의 등임
 - 도로행정팀은 7명의 인원이 서무, 예산, 성과관리, 급여나 일반지출, 세입·세출외 현금지급 등과 같은 행정업무와 미지급용지보상, 소송, 공사나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 업무 및 민원서류접수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전기시설팀은 5명의 인원이 도로전기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사감독, 장안구·권선구·팔달구의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자전거문화팀은 수원시내 자전거문화 활성화에 관한 정책 업무와 공영자전거 관리 및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음

13) 수원시 보도자료, 2014년 8월 4일

■ 도로정비과 (5팀, 18명)

- 도로정비과의 구성은 정비총괄팀과 도로정비 1, 2, 3, 4팀 총 5개팀, 총 인원 18명임
- 정비총괄팀은 총 4인으로 구성되어 도로정비사업계획 및 예산수립과 도로표지판 등의 정비 및 제한차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도로정비1팀은 장안구의 폭15미터 이상 도로나 교량, 지하차도와 같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도로유지관리와 관련된 소송 및 국가배상 업무를 담당
 - 또한 장안구와 팔달구 도로 전기시설물 및 장안구 도로굴착 관리 수행
- 도로정비2팀은 권선구 지하보차도와 육교, 농로박수, 승강장 등 전기시설물 및 도로 시설물 CCTV,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공사감독을 맡고 있으며, 권선구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과 도로굴착인허가 및 영조물 배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도로정비3팀은 팔달구 폭 15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 도로유지관리 소송 및 국가배상업무와 도로 정비공사의 설계 및 감독업무 등을 맡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팔달구의 도로굴착허가 및 관리, 도로관련 민원처리와 시설물 전기, 통신요금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도로정비4팀은 영통구 도로정비공사 설계 및 감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굴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정비공사 설계 및 감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도로관련 소송 및 민원처리 등을 전담하고 있음

■ 자동차등록과 (5팀, 36명)

- 자동차등록과는 등록 1, 2팀과 매매상사팀, 차량세무팀, 복수원민원센터팀 총 5개팀, 총 인원 36명으로 구성됨
- 등록1팀은 자동차신규등록 및 이전·변경등록업무를 위주로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과 차량신규등록 등에 관한 서버관리 등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 민원 안내 업무와 폐번호판 관리 및 조례 관련 업무를 담당함
 - 등록1팀은 자동차등록업무 외에도 서무, 회계, 급여관리 및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과 직원들 근무상황관리 및 각종수당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됨
- 등록2팀은 자동차신규등록 이외에 건설기계 신규·말소, 대여사업자 관리 및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단속과 등록번호판교부 대행업체 감독 업무 담당자와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및 등록원부,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와 저당 설정·말소 등 저당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함

- 건설기계등록 업무 외에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번호판 교체, 자동차등록증 관련 업무와 차령초과, 수출말소, 저당설정·말소, 저당변경·이전, 세외수입, 범원가압류 등록·해제 및 압류등록·해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매매상사팀은 수원시내 자동차 매매상사와 관련된 이전·변경등록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관내 자동차 매매상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들의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¹⁴⁾
- 차량세무팀은 차량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와 차량의 이전등록 관련 취득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북수원민원센터팀은 장안구청사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할지역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과업무 및 상사매입·이전과 경매·공매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북수원민원센터는 타등록관청에 대한 등록업무 및 말소등록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

■ 자동차관리과 (4팀, 23명)

- 자동차관리과는 검사보험팀, 체납관리팀, 자동차관리팀, 특별사법경찰팀 총 4개팀, 23명으로 구성됨
- 검사보험팀은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검사 촉구와 검사기간 연장,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체납관리팀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과 관련한 부동산 압류·해제와 결손, 개인회생,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담당함
- 자동차관리팀은 자동차 정비업과 폐차업의 등록과 변경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처분 및 관련 사건수사부터 검찰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4) 자동차등록과는 지난 5월 수원시 자동차 매매상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이전처리를 위한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함

3. 수원시 자동차등록과의 민원처리 업무량

■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의 등록1, 2팀과 북수원 민원센터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는 다음 <표 4-1>과 <표 4-2>와 같음

<표 4-1> 등록1, 2팀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2017.01~2017.09)

단위 : 건

구분	차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계
	신규등록	등록관청	관할	8,621	354	1,118	48
시도내			7,283	220	1,161	13	8,677
시도외			2,443	98	321	0	2,862
타등록관청		시도내	11,073	231	1,227	47	12,578
		시도외	5,243	95	482	20	5,840
		전입	22,600	679	1,825	96	25,200
변경등록	등록관청	관할	81,781	2,978	7,868	216	92,843
		시도내	966	103	271	12	1,352
		시도외	265	7	33	1	306
	타등록관청	시도내	850	63	158	2	1,073
		시도외	191	7	28	3	229
		전출	24,751	784	2,199	37	27,771
이전등록	등록관청	관할	88,263	4,679	10,688	85	103,715
		시도내	35,185	1,700	4,554	41	41,628
		시도외	33,516	1,557	3,702	9	38,784
	타등록관청	시도내	24,268	1,510	4,127	45	29,950
		시도외	6,133	215	600	4	6,952
		전입	89,317	4,649	11,675	119	105,760
말소등록	등록관청	관할	2,302	299	378	3	2,982
		시도내	3,519	282	479	5	4,285
		시도외	1,612	136	155	0	1,903
	타등록관청	시도내	6,568	456	1,085	6	8,115
		시도외	4,377	430	818	3	5,628
		증감	10,625	-368	-462	145	9,940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위치한 등록1, 2팀의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의 경우, 총 65만3,597건의 등록업무 중에서 이전등록과 관련된 업무가 43만1,872건으로 전체의 6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지난해 동기(2016년 1월~9월)대비 5만2,84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 북수원민원센터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2017.01~2017.09)

단위 : 건

구분	차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계
		신규등록	시도내	6,125	141	546
	시도외	1,090	14	95	0	1,199
변경등록	시도내	458	49	59	1	567
	시도외	30	1	3	0	34
이전등록	시도내	21,487	1,342	3,556	7	26,392
	시도외	4,876	313	809	0	5,998

- 북수원민원센터의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는 총 4만 1,002건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내 자동차등록과의 2017년 9월까지의 민원처리량의 약 6.3%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북수원민원센터팀이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중에서 신규·변경·이전등록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임
- 신규·변경·이전등록 관련 북수원민원센터의 처리건수를 합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원시 전체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해당 기간 동안 68만4,659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처리한 자동차등록 민원 중에서 차종에 상관없이 전입과 전출을 제외하고 등록관청 여부만을 비교했을 때, 등록관청은 350,480건으로 타 등록관청 건수인 70,365건의 약 5배가 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비중은 관할지역(수원시, 49.8%)보다 시도내·외 지역(50.2%)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입·출을 제외한 관할지역(수원시)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는 209,6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41,429건(33.6%), 경기도 외 지역 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69,735건(16.6%)임

<표 4-3>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2017.01~2017.09)

단위 : 건

구분		차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계
신규등록	등록관청	관할	8,621	354	1,118	48	10,141
		시도내	13,408	361	1,707	13	15,489
		시도외	3,533	112	416	0	4,061
	타등록관청	시도내	11,073	231	1,227	47	12,578
		시도외	5,243	95	482	20	5,840
변경등록	등록관청	관할	81,781	2,978	7,868	216	92,843
		시도내	1,424	152	330	13	1,919
		시도외	295	8	36	1	340
	타등록관청	시도내	850	63	158	2	1,073
		시도외	191	7	28	3	229
	전입		22,600	679	1,825	96	25,200
	전출		24,751	784	2,199	37	27,771
이전등록	등록관청	관할	88,263	4,679	10,688	85	103,715
		시도내	56,672	3,042	8,110	48	68,020
		시도외	38,392	1,870	4,511	9	44,782
	타등록관청	시도내	24,268	1,510	4,127	45	29,950
		시도외	6,133	215	600	4	6,952
	전입		89,317	4,649	11,675	119	105,760
	전출		88,231	4,407	12,309	136	105,083
말소등록	등록관청	관할	2,302	299	378	3	2,982
		시도내	3,519	282	479	5	4,285
		시도외	1,612	136	155	0	1,903
	타등록관청	시도내	6,568	456	1,085	6	8,115
		시도외	4,377	430	818	3	5,628

■ 1인당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 2017년을 기준으로 등록1, 2팀과 복수원민원센터의 월별 1인당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¹⁵⁾는 평균적으로 3,187건
- 평균적으로 하루에 1인이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량¹⁶⁾이 159건 정도라고 볼 수 있음

<표 4-4> 1인당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2017.01~2017.09)

단위 : 건

	등록1, 2팀 (18명)		복수원민원센터 (6명)		수원시 전체 (24명)	
	민원처리 건수	1인당 처리 건수	민원처리 건수	1인당 처리 건수	민원처리 건수	1인당 처리 건수
2017년 1월	65,347	3,630	4,513	752	69,860	2,911
2017년 2월	82,005	4,556	4,294	716	86,299	3,596
2017년 3월	82,583	4,588	5,216	869	87,799	3,658
2017년 4월	68,641	3,813	4,421	737	73,062	3,044
2017년 5월	69,336	3,852	4,593	766	73,929	3,080
2017년 6월	70,698	3,928	4,986	831	75,684	3,154
2017년 7월	66,255	3,681	4,288	715	70,543	2,939
2017년 8월	70,871	3,937	4,370	728	75,241	3,135
2017년 9월	71,657	3,981	4,321	720	75,978	3,166
평균	71,933	3,996	4,556	759	76,488	3,187

○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업무시간 추정

-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업무 1건에 소요되는 시간을 1, 3, 5, 7, 10분으로 가정하였을 때, 159건을 모두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추정하면 다음 <표 4-5>와 같음
- 1건당 소요시간이 1분일 경우, 2.7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록서류 접수부터 서류검토 및 처리·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데,

15) 자동차등록과에서 매일 업무담당자의 처리건수를 파악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매월 자동차등록민원처리 건수의 총계를 등록1,2팀 및 복수원민원센터 인원으로 나눔

16) 한 달에 근무일수를 20일로 가정하고 월평균 1인당 처리건수를 20으로 나눔

- 최소 3분 이상 소요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약 8시간, 즉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동안 등록1, 2팀과 북수원민원센터의 모든 팀원들이 하 루종일 해당 업무에만 매진해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됨

<표 4-5> 1인당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업무시간

단위 : 시(時)

	건당 1 분	건당 2분	건당 3 분	건당 5 분	건당 7 분	건당 10 분
업무처리 시간(日)	2.7	5.3	8.0	13.3	18.6	26.6

제2절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상 애로사항 파악

1. 수원시 자동차등록과 담당공무원 인터뷰

■ 인터뷰 개요

-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 실시
- 자동차등록과 직원들 인터뷰를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함

2.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 관련 애로사항

■ 자동차등록관련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문제

- 등록과에 방문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를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전화응대를 받기에도 힘든 실정이며, 직원들의 휴식시간 보장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을 이용할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
 - 업무량이 과중한 날의 경우, 동료직원의 부재 시에는 1인당 민원처리건수가 700건을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임
- 창구 내에 위치한 직원들은 전화로 민원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량도 많아 민원인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고 만족도 높은 답변을 드리는 데 어려움
- 자동차등록과의 업무량 과중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인지되어 매년 격무부서로 지정되고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음

- 근무평가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으나 2년마다 실시되는 근무평가를 받기 전에 타 부서로 전보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과에서 근무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없음
 - 격무부서 지정으로 매달 5만 원 복지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직원들이 느끼는 보상 체감은 매우 낮은 편(사회복지사의 경우 약 10만 원 복지비를 지급받고 있음)
- 자동차등록 외 기타업무 수행이 불가능
 - 자동차등록과의 핵심 업무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사항이나 검사보험팀, 자동차관리팀, 특별사법경찰팀은 현장에 투입되어 단속·점검 등의 업무 수행
 - 그러나 등록관련 민원처리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현장 단속·점검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 현장 단속·점검 업무의 수행은 현재 주간에 실시가 불가할 경우 야간에 업무를 볼 때가 많으며 2인1조로 운용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직원의 민원업무 처리가 바쁠 때에는 공익 근무요원을 대리로 투입시키는 경우가 많음
 - 비효율적인 자동차등록과 업무 공간 활용
 - 자동차등록과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매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
 - 매일 수백 명 이상이 방문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과 업무공간의 공기질이 나쁘며 소음으로 인한 업무수행 차질이 발생
 - 민원인들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공간문제와 소음에 대해서 자주 문제를 제기
 - 직원들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업무공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 온라인 등록시스템 사용 미흡
 - 국토부에서 자동차등록을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했으나 실제 이행 실적은 적음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중고매매업자들이 자동차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약 25만 원 정도 책기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강화 방안이 있어야 하나 현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경기도 조례개정 및 규제강화로 온라인 등록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제3절 경기도 내 타 지역 차량등록 업무 현황 비교

1. 개요

- 자동차등록업무 현황 비교지역 선정
 - 수원시 중심으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급 9개시를 대상으로 비교 실시
 - 수원시 주변 지역을 선정함에 따라 경기 남부권으로 비교지역을 선정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등록 조직과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자동차등록대수에 대한 현황 파악



<그림 4-3> 차량등록업무 현황 비교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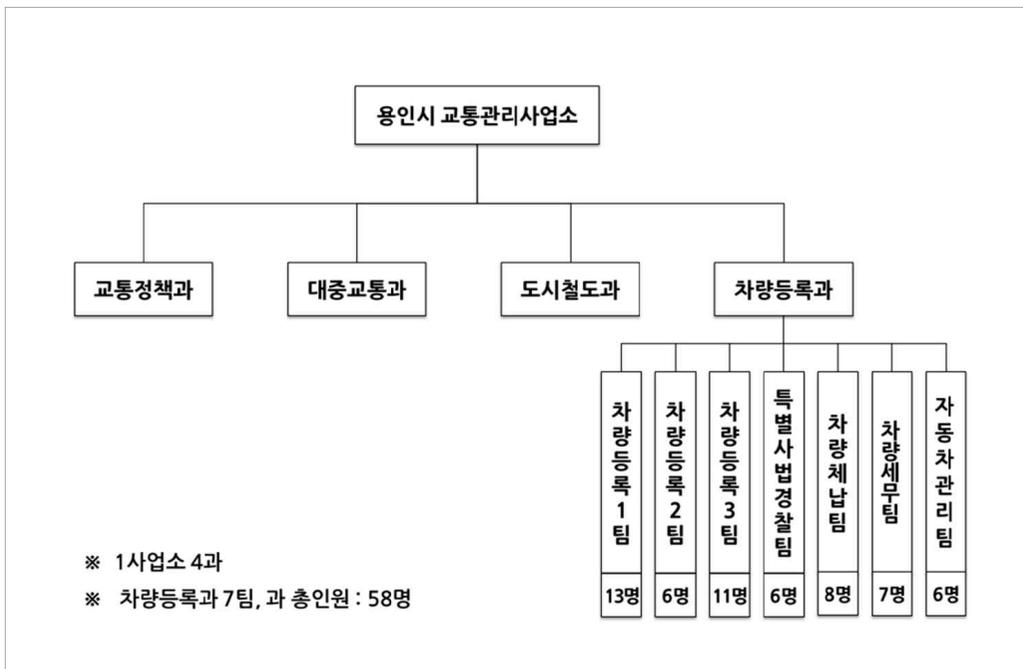
- 자동차등록업무 현황 파악 내용
 - 자동차등록조직 특성 조사
 - 각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조직은 사업소 형태로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수원시와 같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산하 또는 국 단위 조직 아래에 자동차등록과로 운영하는 곳이 있음
 - 각 시별로 어떤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지, 민원처리 사무실은 시청과 별도 건물을 사용하는 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매매단지와의 접근성 등을 파악
 -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자동차등록대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변화양상 파악 실시

2. 각 지역별 자동차등록업무 현황

1) 용인시

■ 용인시 자동차등록 조직

- 용인시 자동차등록과는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용인시 교통관리사업소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며 차량등록과는 총 7개 팀으로 구성
- 차량등록과 직원은 총 58명이며 자동차 등록업무는 총 3개 팀으로 구성 등록업무 직원은 30명이 업무를 담당
 - 용인시 자동차등록업무의 경우 등록2팀은 관내 수지구 비사업용등록차량, 등록3팀은 관내 기흥구 비사업용등록차량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등록1팀에서는 그밖에 관내 및 관외 등록업무를 맡아 총 3개 팀으로 운영
- 수원시와 자동차등록업무를 비교해보면 수원시의 경우 자동차관리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자동차관리업무와 체납관리 및 특별사법경찰팀 업무를 함께 수행했으나 용인시의 경우에는 차량등록과에서 수원시의 차량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림 4-4> 용인시 자동차등록 조직

■ 용인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용인시 자동차등록대수의 2010년도부터 2017년 7월까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약 33만대에서 2017년 약 41만대로 자동차등록대수가 약 8만대 가량 늘어남
- 한 해가 지날수록 약 1만 대 가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6> 용인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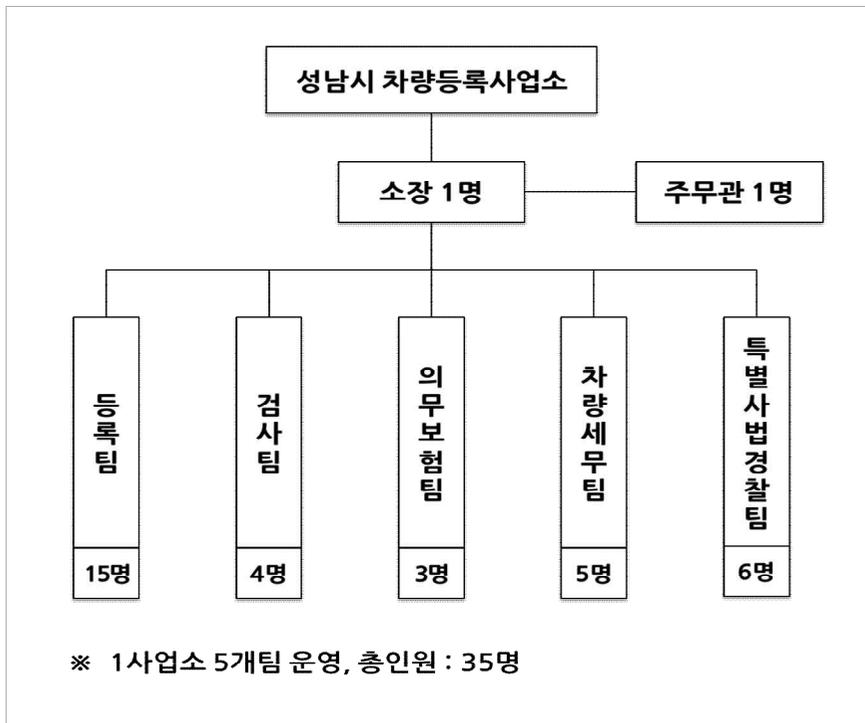
연도 지역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07
용인시	335,615	345,438	353,388	365,148	379,841	395,717	410,302	419,97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2) 성남시

■ 성남시 자동차등록 조직

- 성남시의 자동차등록업무는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조직을 통해서 업무 수행
 -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소 총 인원은 35명
 - 차량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수는 총 15명으로 구성
-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는 자동차등록, 이륜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자동차검사, 책임보험과태료, 차량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수원시의 경우와 비교해봤을 때 차량등록에 대한 업무를 사업소 조직으로 독립된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 조직 없이 사업소 직계로 차량등록업무를 각 팀별로 수행
-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성남시청 건물과는 별도로 위치하고 있음
 -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인근에 대규모 자동차매매단지가 운영 중인 것에 반해 성남시는 주변이 공원 및 아파트로 자동차 업무 연계와는 거리가 멀



<그림 4-5> 성남시 자동차등록조직

■ 성남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성남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은 2010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나 수원시와 용인시와 같은 수준은 아니고 지속 유지 및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매년 약 3,000대~5,000대 자동차등록이 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6년은 약 1만여 대가 늘어났음

<표 4-7> 성남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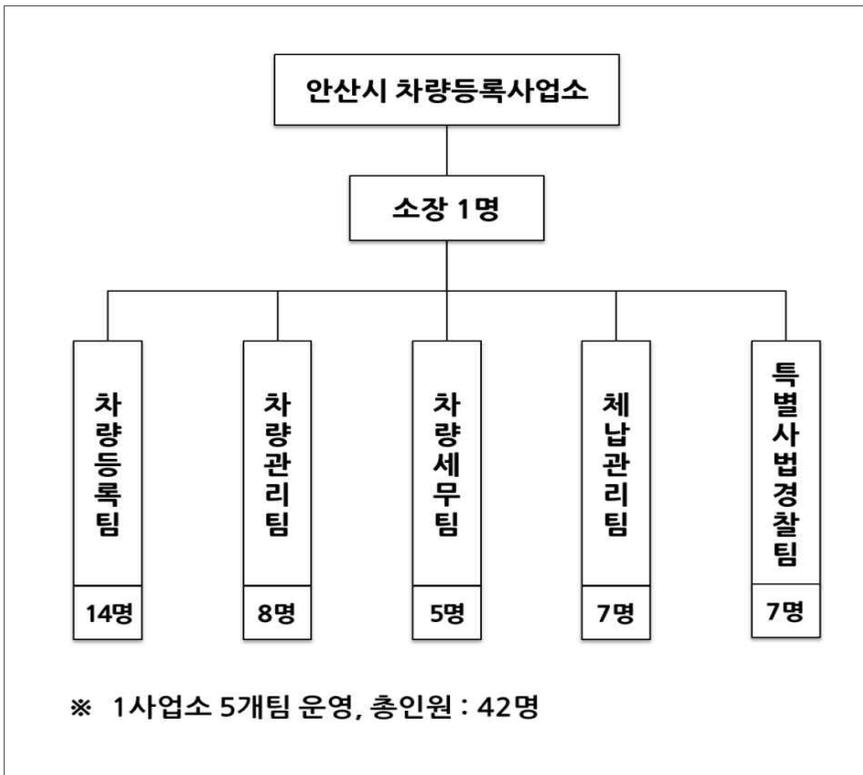
연도 지역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07
성남시	301,703	303,756	306,059	310,097	315,096	322,510	332,798	337,68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3) 안산시

■ 안산시 자동차등록 조직

- 안산시의 자동차등록조직은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조직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소 아래 팀 운영도 성남시와 같은 형태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총 인원은 42명으로 성남시 보다는 적은 규모이며 차량등록팀 직원 수는 14명으로 성남시와 비슷한 규모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타 지역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시청 청사와는 별도 건물 사용
 - 사업소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6월에 소사원시선 선부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그림 4-6> 안산시 자동차등록조직

■ 안산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안산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17년 현재 약 29만 5천 명이며 2010년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 이후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4만대가 늘어나는 추세
- 안산시의 경우 매년 자동차등록대수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매우 작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매년 평균적으로 4,000대에서 7,000대 정도로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표 4-8> 안산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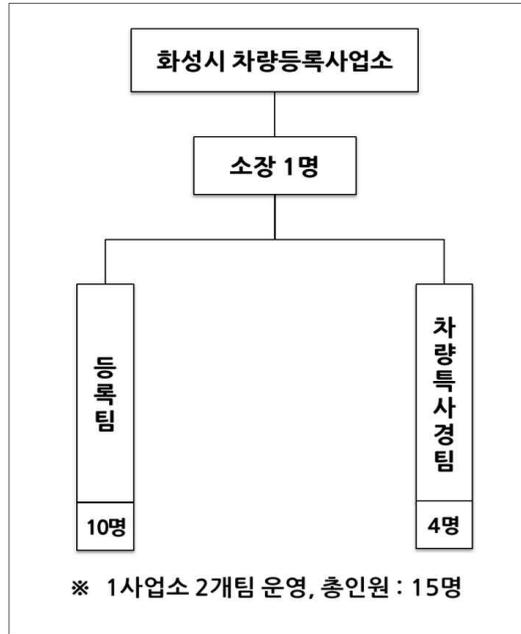
연도 지역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07
안산시	256,358	260,652	263,796	270,076	276,895	284,245	291,524	295,74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4) 화성시

■ 화성시 자동차등록 조직

- 화성시의 자동차등록조직은 성남시, 안산시와 같은 차량등록사업소 조직으로 차량등록 업무를 수행
 - 다만, 앞서 소개한 성남, 안산과는 다르게 조직규모가 매우 작은 편
 - 등록팀과 차량특사경팀 단 2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등록팀 직원은 10명, 차량특사경팀 직원 4명으로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총 인원은 14명으로 구성
 - 등록팀에서 타 지역에서 수행하는 차량관리, 차량세무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는 화성종합경기타운(종합운동장) 내에 별도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 중
 - 종합경기타운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주거지역도 아니며 인근에 지하철역 또는 버스가 많이 운행하지 않아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님



<그림 4-7> 화성시 자동차등록조직

■ 화성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화성시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약 22만 대에서 2017년 현재는 약 33만 대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록
- 주목할 점은 2013년까지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2017년 현재 까지 가파른 상승세
 - 매년 약 3만 대 가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약 33만 여대는 성남시와 비슷한 수준
- 현재 정확한 이유와 원인파악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이나 2014년 이후 자동차등록대수 급증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9> 화성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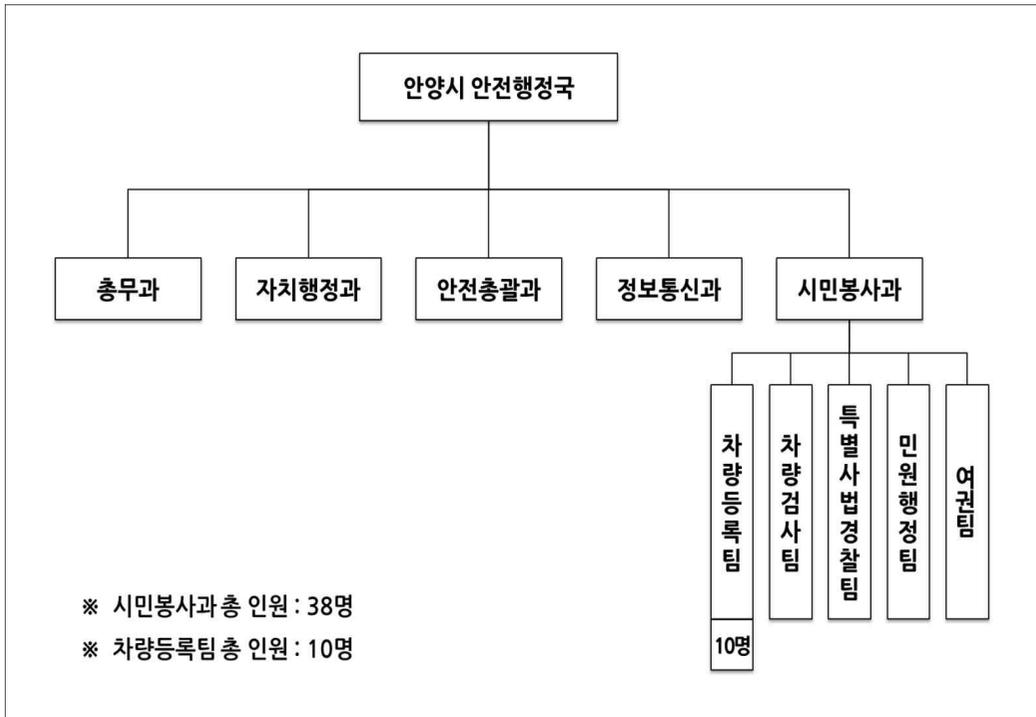
		(단위: 대)							
연도 지역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07	
화성시	220,067	229,640	236,431	243,463	255,078	288,458	318,430	337,771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5) 안양시

■ 안양시 자동차등록 조직

- 안양시 자동차등록 조직은 안양시 안전행정국 아래에 시민봉사과 소속으로 되어있음
- 차량관련 업무는 차량등록팀, 차량검사팀, 특별사법경찰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행정팀과 여권팀이 시민봉사과에 함께 소속되어있음
- 차량등록팀 직원은 총 10명이며 차량검사팀 5명, 특별사법경찰팀 5명으로 차량관련 업무 인원은 총 20명임
- 안양시 차량등록 민원은 안양시청 내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지역들은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조직규모 또는 상위부서 유무의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건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나 안양시의 경우에는 시청 청사에서 민원처리 수행 중



<그림 4-8> 안양시 자동차등록조직

■ 안양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안양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매년 약 20만 대 가량의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10> 안양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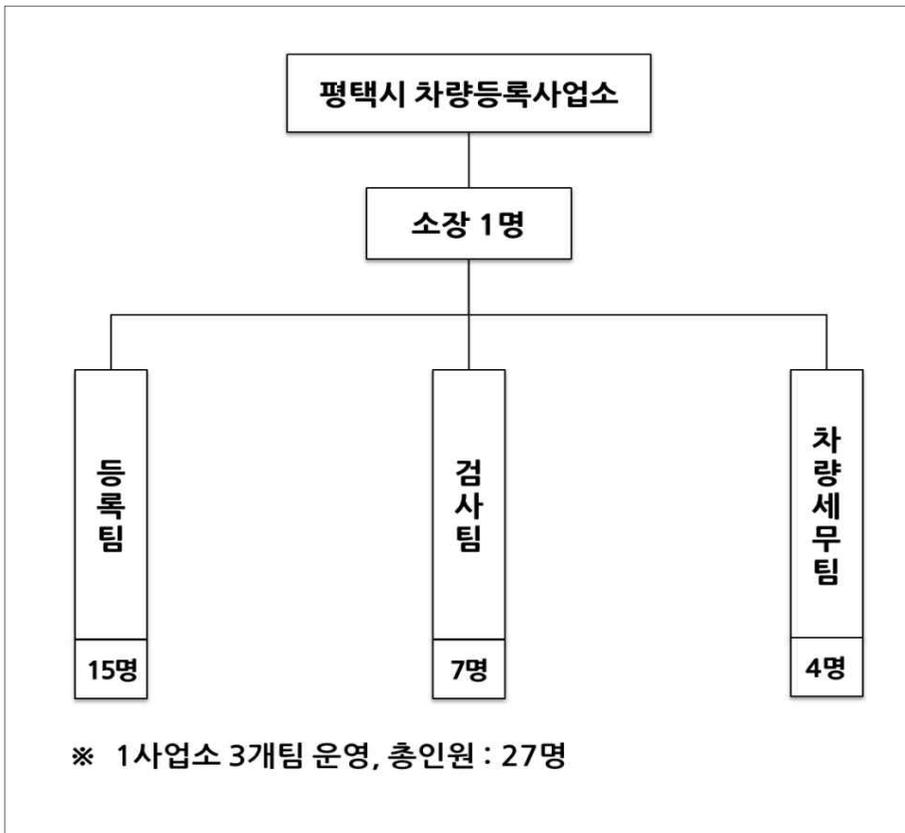
연도 지역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07
안양시	194,086	194,263	194,775	196,301	198,675	203,504	209,151	211,742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6) 평택시

■ 평택시 자동차등록조직

- 평택시 자동차등록조직은 차량등록사업소 형태로 운영 중이며 등록팀, 검사팀, 차량세무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
 - 차량등록사업소 총 인원 수는 27명이며 등록팀은 15명, 검사팀은 7명, 차량세무팀은 4명이 근무
 - 평택시의 지역 특성상 평택시 내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등록팀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Sofa차량(한국에 근무하는 미군이나 군무원 차량)에 대한 등록업무와 임시운행 허가 업무를 수행
- 앞서 살펴본 지역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평택시의 경우 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과 과태료부과 업무를 맡고 있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없다는 점
-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평택시청과는 별도 건물이 시청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업무 수행



<그림 4-9> 평택시 자동차등록조직

■ 평택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평택시 자동차등록대수는 2017년 현재 약 23만대이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등록추세를 살펴보면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상승폭이 조금씩 증가

<표 4-11> 평택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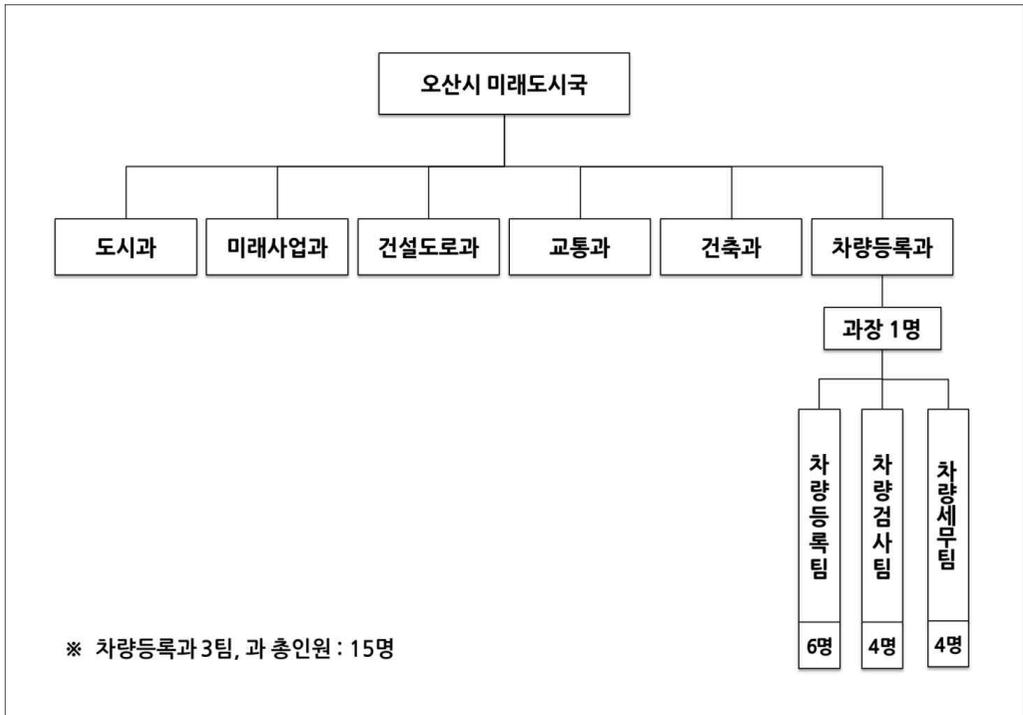
연도 지역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07
평택시	174,040	180,933	186,597	193,457	202,727	215,512	228,762	237,21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7) 오산시

■ 오산시 자동차등록조직

- 오산시 자동차등록조직은 오산시 미래도시국 산하에 차량등록과가 소속되어 있으며 차량등록과에는 차량등록팀, 차량검사팀, 차량세무팀 3개의 팀으로 구성
- 차량등록과의 각 팀별 인원구성을 살펴보면 차량등록팀은 6명, 차량검사팀은 4명, 차량세무팀은 4명으로 차량등록과 총 직원 수는 15명임
- 3개 팀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차량등록과 내의 차량관리 및 특별 사법경찰계 업무를 차량등록팀과 차량검사팀, 차량세무팀에서 각각 업무 분담
 - 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등록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차량을 단속은 차량검사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세무팀에서 수행



<그림 4-10> 오산시 자동차등록조직

■ 오산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오산시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이후 2017년 현재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0년 대비 약 3만여 대가 늘어남
- 2017년 7월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9만1천대를 상회

<표 4-12> 오산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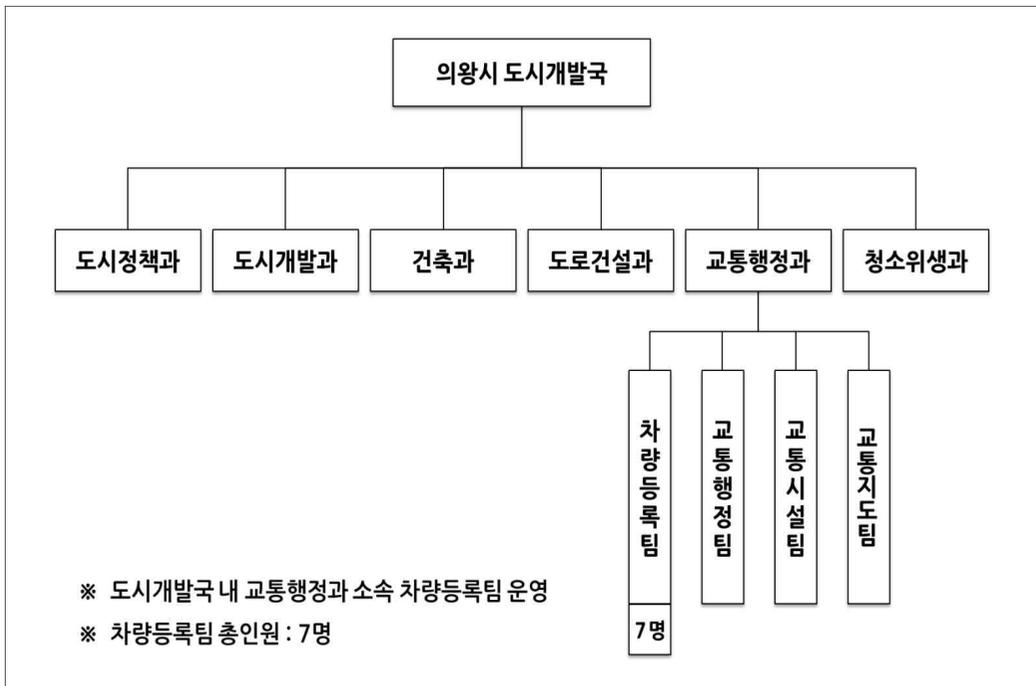
(단위: 대)

연도 지역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07
오산시	66,147	71,719	74,247	78,020	81,415	83,826	88,232	91,35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8) 의왕시

■ 의왕시 자동차등록조직



<그림 4-11> 의왕시 자동차등록조직

- 의왕시 자동차등록조직은 의왕시 도시개발국 내 교통행정과 산하에 차량등록팀 1개 팀으로 운영
 - 이번에 살펴보는 대상 중에서 경기도 내 지역별 자동차등록업무현황 비교에서 가장 적은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 중
 - 차량등록팀 인원은 총 7명이며 차량등록팀에서 등록, 검사, 관리, 특별사법경찰계 업무를 모두 맡아서 수행 중에 있음
 - 의왕시 차량등록팀은 의왕시청 청사 부지 내에 종합민원동에 위치하고 있음
- 의왕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의왕시 자동차등록대수는 오산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 7월 기준 약 6만여 대 등록
 - 미세한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표 4-13> 의왕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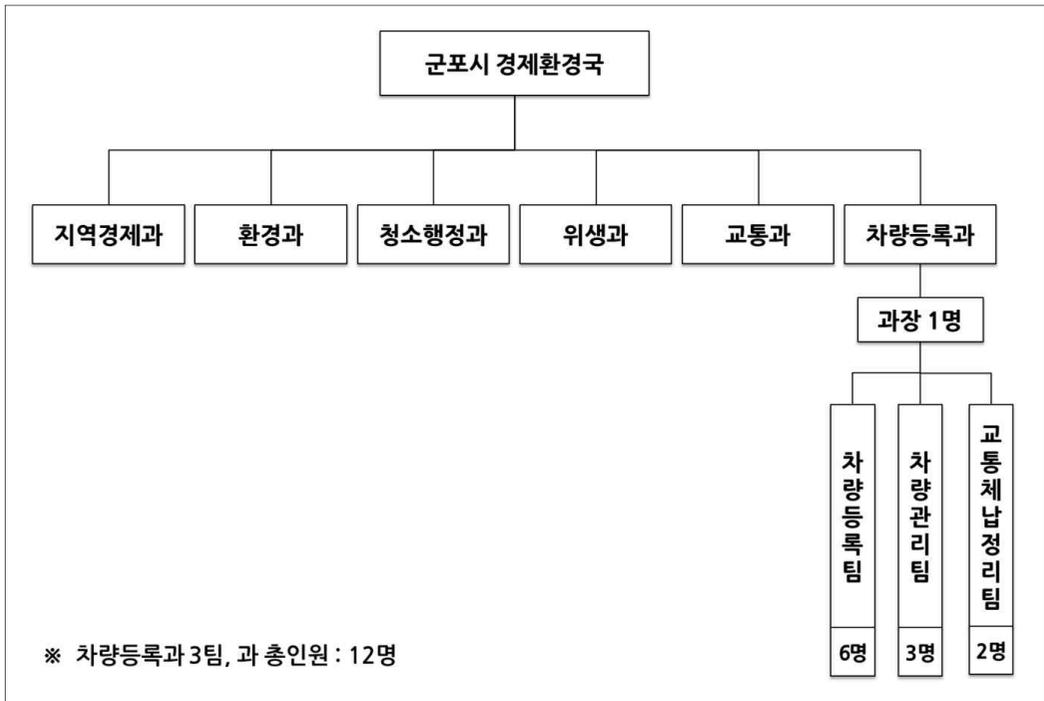
연도 지역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07
의왕시	49,511	50,889	52,993	55,219	56,153	57,857	59,083	59,549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9) 군포시

- 군포시 자동차등록조직
- 군포시 자동차등록조직은 군포시 경제환경국 내 차량등록과로 운영 중에 있음
 - 차량등록과는 차량등록팀과 차량관리팀, 교통체납정리팀으로 구성
 - 차량등록과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등록과장 1명, 차량등록팀 6명, 차량관리팀 3명, 교통체납정리팀 2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
 -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차량등록업무 인원이 적은 편

- 차량등록팀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차량등록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차량관리팀에서는 타 지역 특별사법경찰팀의 업무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단속과 처분 업무를 포함한 차량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
- 교통체납정리팀에서는 교통체납고시서 발송과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림 4-12> 군포시 자동차등록조직

■ 군포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군포시 자동차등록대수는 2017년 현재 약 10만대이며 아주 적은 폭이지만 지속적인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추세에 있음
- 이번 자동차등록현황 비교 지역에서 오산, 의왕, 군포 3개 지역이 가장 낮은 수의 자동차등록을 보이고 있으며 3개 지역은 따로 분류가 가능함
- 오산, 의왕, 군포 3개 지역 중에서는 군포의 자동차 등록 수가 가장 많음

〈표 4-14〉 군포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단위: 대)

연도 지역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07
의왕시	89,272	90,145	90,413	91,916	94,648	96,396	98,576	99,62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3. 자동차등록업무 현황 비교

■ 자동차등록조직 운영 비교분석 결과

○ 자동차 등록조직에 대한 조직운영형태를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지역의 자동차등록조직운영은 자동차등록사업소, 국 단위 조직 내에 자동차등록과, 또는 국→과 아래에 자동차등록팀 형태의 조직편제 구성
- 수원시와 같은 형태의 조직편제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수행 중인 곳은 용인시였으며 사업소 형태의 지역은 성남, 안산, 화성, 평택 4개 지역
- 안양, 오산, 의왕, 군포의 경우에는 국 단위 조직 산하에 과 또는 팀으로 자동차등록업무 수행
- 인구가 많고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용인, 성남, 안산, 화성 등의 지역에서는 차량등록업무 사무소가 시청 청사와는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여 민원업무를 수행
- 의왕, 군포와 같은 지역에서는 시청 청사 부지 내의 민원처리 사무실에서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처리

〈표 4-15〉 자동차등록조직 운영형태 비교분석결과

지역	조직운영형태	조직 위치
용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교통관리사업소 내 차량등록과 운영 - 차량등록과는 총 7팀 - 차량등록업무는 총3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청 인근에 차량등록과 사무실 별도 운영 - 기흥구청, 수지구청 내에 각각 사무소 설치 - 용인시 자동차등록 업무는 사무실 총 3곳
성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 총 5개 팀으로 운영 - 등록업무 1개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청 청사와는 별도 사무실 운영 - 접근성이 낮은 편이며 자동차 관련 업무 연계 정도도 낮음
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 총 5개 팀으로 운영 - 등록업무 1개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청사와 별도 사업소 건물 사용 - 사업소 위치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높은 편
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 등록팀과 차량사경팀 2개 팀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 종합경기타운(종합운동장)내에 별도 건물 사용 - 사업소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
안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 안전행정국 내 시민봉사과 산하 차량등록팀 운영 - 시민봉사과 내에 차량등록 관련 업무는 3개 팀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청 청사 부지 내에 종합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업무 처리
평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 사업소 내 등록팀, 검사팀, 세무팀 총 3개 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시청 청사와 별도로 사업소 건물 사용 -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 떨어짐
오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시 미래도시국 내 차량등록과 운영 - 차량등록과는 등록팀, 검사팀, 세무팀 총 3개 팀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등록 사무를 보는 곳은 시청과는 별도 사무실을 사용 - 오산역과 오산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높은 편 - 주변에 대학과 주거단지,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도 많음
의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왕시 도시개발국 내 교통행정과 산하 차량등록팀 운영 - 교통행정과 내에 차량등록 관련 업무는 차량등록팀 1개 팀에서 업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왕시청 청사 부지 내에 종합민원동에 차량등록팀 업무수행
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포시 경제환경국 내 차량등록과 설치 운영 - 차량등록과 내에 등록팀, 관리팀, 체납정리팀 3개 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포시청 청사 내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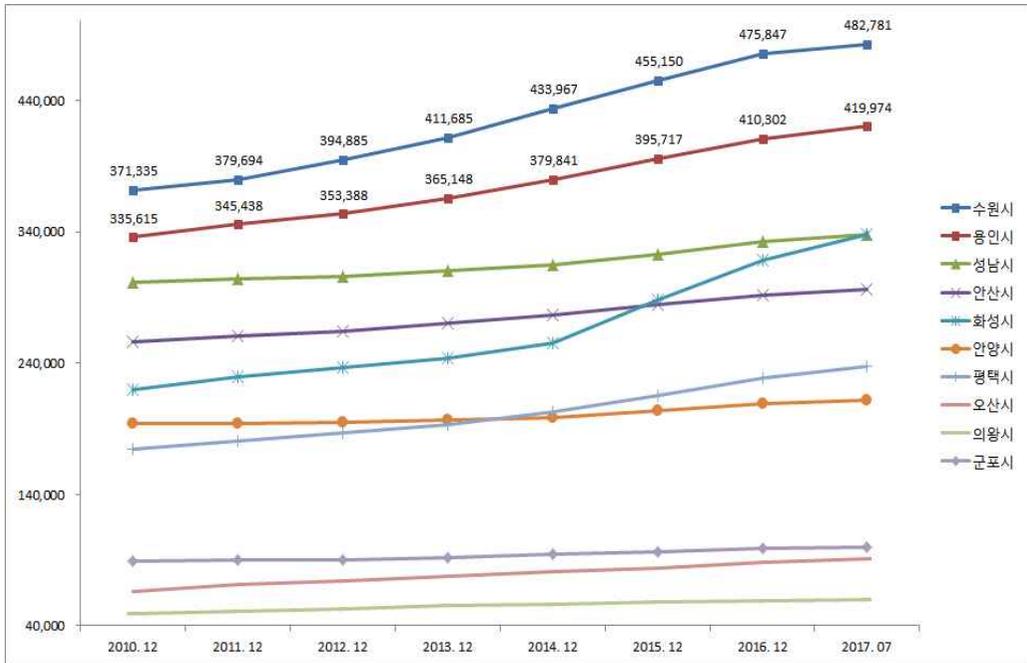
- 자동차등록 담당 인력 및 업무처리 현황분석은 다음과 같음
 - 각 지역별 자동차등록업무 담당 인력과 일별 민원처리건수 파악
 - 자동차등록 담당직원은 등록업무(신규, 이전, 말소, 건설·기계등록)에 한정하여 인원 파악
 - 자동차등록대수는 현재일 기준으로 최근 현황인 2016년도 자료와 2017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료조사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직원의 일별 민원처리건수 파악
 - 2016년과 2017년 2개 연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 지역은 없었으며 1인당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지역은 화성시로 2016년 133건, 2017년 141건 일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적은 일별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의왕시로 2016년과 2017년 모두 35건을 담당하고 있음

<표 4-16> 지역별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인력현황 및 1인당 민원처리건수

지역	자동차등록 담당 직원 수(명)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직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일별 건수)	
		2016	2017(1월~7월)	2016	2017(1월~7월)
용인	30	410,302	419,974	57	58
성남	15	332,978	337,684	92	94
안산	14	291,524	295,743	87	88
화성	10	318,430	337,771	133	141
안양	10	209,151	211,742	87	88
평택	15	228,762	237,217	64	66
오산	6	88,232	91,356	61	63
의왕	7	59,083	59,549	35	35
군포	6	98,576	99,624	68	69

■ 지역별 자동차등록대수 변화추이

- 이번 비교분석 대상지역과 수원시를 포함한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등록대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비교대상 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원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대수는 2015년부터 약 45만대를 넘기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입
 - 수원과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등록대수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용인시이며 나머지 지역은 매년 자동차등록대수 30만대 이하
- 8개년 동안 자동차등록대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수원시와 용인시의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며 등록대수도 가장 많음



<그림 4-13> 지역별 자동차등록대수 변화추이

제4절 차량등록 민원수요 예측 및 적정인원 산출

1. 자동차등록 업무의 적정인원 산출

■ 적정인원 산출 방법

- 수원시 자동차등록 관련 적정한 담당인원 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기로 함
 - 수원시 자동차등록 관련 적정한 담당인원수 도출을 위해 수원과 유사한 조건의 경기도 지역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들의 1인당 평균 차량등록 업무처리량을 기준으로 활용함
 - 이를 위해 해당 도시들이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다음 <표 4-17>은 경기도에서 인구수 50만 이상인 도시 9곳의 자동차등록 대수와 인구수 현황으로 이 중에서 수원시와 이상값(outlier)인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 7곳의 평균값을 활용함
 - 화성시를 평균값 산출에서 제외한 이유는 2014년 이후 화성시의 차량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상값으로 평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업무량 증가로 앞서 가정한 바와 배치되기 때문임

<표 4-17>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현황

	자동차등록대수	인구수
수원시	475,847	1,207,032
고양시	384,526	999,098
용인시	410,302	982,590
성남시	332,798	951,518
부천시	294,966	844,043
안산시	291,524	743,072
화성시	318,430	655,350
남양주시	256,286	641,589
안양시	209,151	582,049

-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의 적정인원 산출
 -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화성 제외)의 1인당 평균 차량등록 업무처리량은 하루에 약 78건으로 1년에 직원 한 명이 처리하는 등록업무 건수가 총 18,791건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8〉 1인당 평균 차량등록 업무처리량

	자동차등록 담당 직원 수(명)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직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1일 기준	1년 기준
고양	20	384,526	80	19,226
용인	30	410,302	57	13,677
성남	15	332,978	92	22,199
부천	15	294,966	82	19,664
안산	14	291,524	87	20,823
남양주	12	256,286	89	21,357
안양	10	209,151	87	20,915
평균			78	18,791

- 이를 수원시에 적용할 때, 2016년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약 25.3명,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약 34.4명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됨
 - 현재 수원시 자동차등록과 통록1, 2팀과 북수원민원센터의 총 정원은 24명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인력보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 2017년 3분기까지의 등록대수를 볼 때에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약 10명가량의 인원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및 적정인원 예측

-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방법
 - 수원시에 2018년 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복합매매단지가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수원시 자동차 판매량 증가를 감안한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이 필요

- 수원시 자동차 판매량의 증감이 인구수 증감에 비례할 것으로 가정하고 「2014 수원시 인구추계 모형 개발 및 예측연구(조용준, 2016)」 결과를 활용하여 2045년까지의 수원시 자동차 증가 추세를 도출
 - 또한 수원시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은 수원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은 수원시를 포함한 인근 도시의 자동차 1대당 인구수 평균과 조용준(2016)의 인구예측 결과를 활용함
 - 인구예측 결과는 비관·낙관·보수·합리·회귀수리 5가지 시나리오 결과를 이용
- 수원 인근 지역의 자동차 1대당 인구수 평균은 2.48명으로 인구 1인당 0.403대의 차량을 등록한다고 볼 수 있음

<표 4-19> 지역별 자동차 1대당 인구수 (2016년 기준)

	자동차등록 대수	인구수	자동차 1대당 인구수 (인구수/등록대수)
수원	475,847	1,190,712	2.50
용인	410,302	982,590	2.39
성남	332,978	951,518	2.86
안산	291,524	743,072	2.55
화성	318,430	655,350	2.06
안양	209,151	582,049	2.78
평택	228,762	472,254	2.06
오산	88,232	215,478	2.44
의왕	59,083	153,629	2.60
군포	98,576	284,301	2.88
평균			2.48

■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 결과

- 자동차 1대당 인구수 평균(2.48)을 아래 수식에 대입하여 도출한 결과를 2045년까지의 각 시나리오별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 결과를 아래 <표 4-20>과 같이 도출

$$\text{자동차등록 민원수요}_t = \text{인구(예측)수}_t \div \text{자동차 1대당 인구수 평균}$$

- 2016년의 실제등록 건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은 합리적 시나리오의 경우 2045년에 약 54만 건 수준으로 2016년 대비 약 7만 건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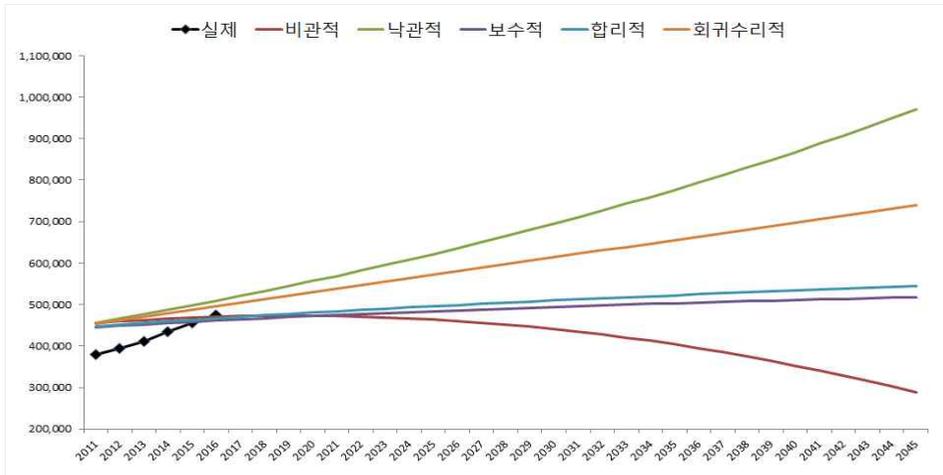
〈표 4-20〉 시나리오별 인구예측 비교

년도	실제인구	비관적	낙관적	보수적	합리적	회귀수리적
2011	1,088,489	1,129,017	1,130,356	1,104,175	1,107,356	1,126,967
2012	1,120,258	1,139,511	1,155,730	1,113,044	1,118,165	1,147,767
2013	1,148,157	1,148,631	1,181,674	1,121,501	1,128,570	1,168,567
2014	1,174,228	1,156,377	1,208,201	1,129,582	1,138,603	1,189,367
2015	1,184,624	1,162,749	1,235,323	1,137,319	1,148,292	1,210,167
2016	1,190,712	1,167,748	1,263,054	1,144,740	1,157,663	1,230,967
2017	-	1,171,371	1,291,407	1,151,870	1,166,738	1,251,767
2018	-	1,173,621	1,320,397	1,158,730	1,175,538	1,272,567
2019	-	1,174,497	1,350,037	1,165,342	1,184,081	1,293,367
2020	-	1,173,999	1,380,343	1,171,721	1,192,383	1,314,167
2021	-	1,172,127	1,411,330	1,177,884	1,200,458	1,334,967
2022	-	1,168,881	1,443,011	1,183,845	1,208,321	1,355,767
2023	-	1,164,261	1,475,405	1,189,616	1,215,983	1,376,567
2024	-	1,158,266	1,508,525	1,195,210	1,223,456	1,397,367
2025	-	1,150,898	1,542,389	1,200,637	1,230,750	1,418,167
2026	-	1,142,156	1,577,012	1,205,907	1,237,873	1,438,967
2027	-	1,132,039	1,612,414	1,211,028	1,244,836	1,459,767
2028	-	1,120,549	1,648,610	1,216,009	1,251,645	1,480,567
2029	-	1,107,684	1,685,618	1,220,857	1,258,309	1,501,367
2030	-	1,093,446	1,723,457	1,225,579	1,264,833	1,522,167
2031	-	1,077,833	1,762,146	1,230,181	1,271,225	1,542,967
2032	-	1,060,846	1,801,703	1,234,670	1,277,490	1,563,767
2033	-	1,042,486	1,842,148	1,239,051	1,283,634	1,584,567
2034	-	1,022,751	1,883,501	1,243,328	1,289,662	1,605,367
2035	-	1,001,642	1,925,782	1,247,508	1,295,578	1,626,167
2036	-	979,160	1,969,013	1,251,593	1,301,388	1,646,967
2037	-	955,303	2,013,214	1,255,588	1,307,095	1,667,767
2038	-	930,072	2,058,407	1,259,498	1,312,704	1,688,567
2039	-	903,467	2,104,614	1,263,325	1,318,218	1,709,367
2040	-	875,488	2,151,859	1,267,074	1,323,641	1,730,167
2041	-	846,135	2,200,165	1,270,746	1,328,976	1,750,967
2042	-	815,408	2,249,555	1,274,346	1,334,226	1,771,767
2043	-	783,307	2,300,053	1,277,876	1,339,394	1,792,567
2044	-	749,832	2,351,685	1,281,339	1,344,484	1,813,367
2045	-	714,983	2,404,477	1,284,737	1,349,497	1,834,167

자료 : 조용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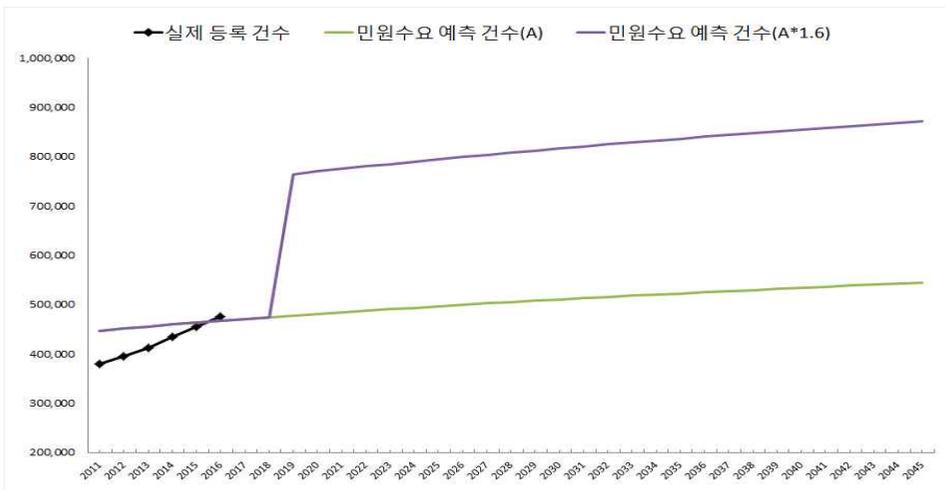
〈표 4-21〉 시나리오별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

년도	실제등록 건수	비관적	낙관적	보수적	합리적	회귀수리적
2011	379,694	455,249	455,789	445,232	446,515	454,422
2012	394,885	459,480	466,020	448,808	450,873	462,809
2013	411,685	463,158	476,481	452,218	455,069	471,196
2014	433,967	466,281	487,178	455,477	459,114	479,583
2015	455,150	468,850	498,114	458,596	463,021	487,971
2016	475,847	470,866	509,296	461,589	466,800	496,358
2017	-	472,327	520,729	464,464	470,459	504,745
2018	-	473,234	532,418	467,230	474,007	513,132
2019	-	473,588	544,370	469,896	477,452	521,519
2020	-	473,387	556,590	472,468	480,800	529,906
2021	-	472,632	569,085	474,953	484,056	538,293
2022	-	471,323	581,859	477,357	487,226	546,680
2023	-	469,460	594,921	479,684	490,316	555,067
2024	-	467,043	608,276	481,940	493,329	563,454
2025	-	464,072	621,931	484,128	496,270	571,842
2026	-	460,547	635,892	486,253	499,142	580,229
2027	-	456,467	650,167	488,318	501,950	588,616
2028	-	451,834	664,762	490,326	504,696	597,003
2029	-	446,647	679,685	492,281	507,383	605,390
2030	-	440,906	694,942	494,185	510,013	613,777
2031	-	434,610	710,543	496,041	512,591	622,164
2032	-	427,760	726,493	497,851	515,117	630,551
2033	-	420,357	742,802	499,617	517,594	638,938
2034	-	412,400	759,476	501,342	520,025	647,325
2035	-	403,888	776,525	503,027	522,410	655,713
2036	-	394,823	793,957	504,675	524,753	664,100
2037	-	385,203	811,780	506,285	527,054	672,487
2038	-	375,029	830,003	507,862	529,316	680,874
2039	-	364,301	848,635	509,405	531,540	689,261
2040	-	353,019	867,685	510,917	533,726	697,648
2041	-	341,183	887,163	512,398	535,877	706,035
2042	-	328,794	907,079	513,849	537,994	714,422
2043	-	315,850	927,441	515,273	540,078	722,809
2044	-	302,352	948,260	516,669	542,131	731,196
2045	-	288,300	969,547	518,039	544,152	739,583



<그림 4-14> 시나리오별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 결과

- 그러나 상기 예측결과는 2018년 말 자동차복합매매단지 완공(예정)으로 추가될 자동차 매매상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수원시 자동차등록과 매매상사팀에 의하면 자동차복합매매단지 조성으로 현재의 약 60% 수준인 120개의 자동차매매상사가 추가 입점할 계획이므로 이를 단순 반영하여 2019년부터 등록예측 건수에 1.6배하여 도출
- 위의 5가지 시나리오 중 합리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19년 자동차복합매매단지 조성으로 60%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게 될 경우 2045년에 예상되는 자동차등록 민원수요는 약 87만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15>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합리적 시나리오)

〈표 4-22〉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합리적 시나리오)

년도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 건수(A)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 건수(A*1.6)
2019	477,452	763,923
2020	480,800	769,280
2021	484,056	774,490
2022	487,226	779,562
2023	490,316	784,506
2024	493,329	789,326
2025	496,270	794,032
2026	499,142	798,627
2027	501,950	803,120
2028	504,696	807,514
2029	507,383	811,813
2030	510,013	816,021
2031	512,591	820,146
2032	515,117	824,187
2033	517,594	828,150
2034	520,025	832,040
2035	522,410	835,856
2036	524,753	839,605
2037	527,054	843,286
2038	529,316	846,906
2039	531,540	850,464
2040	533,726	853,962
2041	535,877	857,403
2042	537,994	860,790
2043	540,078	864,125
2044	542,131	867,410
2045	544,152	870,643

■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결과에 따른 적정인원 산출

- 앞서 도출한 1인당 평균 자동차등록 업무처리량(1일: 78건, 1년 : 18,791건)을 합리적 시나리오에 적용할 경우, 2019년 자동차복합매매단지가 완공된 이후 약 40.6명의 등록 인원이, 2045년에는 44.8명의 등록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합리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향후 2~3년 내에 현재 정원보다 16명가량의 등록 업무 담당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제5절 소결

1.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 수원시 본청 및 각 구청의 민원서류처리건수에 맞먹는 자동차등록업무량
 - 앞선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의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량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으며, 수원시 안에서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청 및 각 구청의 민원처리량에 비견될 정도로 많으며,
 - 확인·증명, 교부 관련 민원업무에만 국한하더라도 이미 구청 1개소 규모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2013년에는 수원시 전체 확인·증명, 교부건수의 13.1%를 차지하였고, 해당업무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권선구의 62.7%, 가장 적은 장안구의 86.6% 수준이었으며,
 - 2014년에는 수원시 전체 확인·증명, 교부건수의 12.2% 수준이었고, 해당업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권선구의 54.8%를 차지하였으나 가장 적은 장안구의 94.7%로 41,861건 정도의 차이를 보였음
 - 2015년에는 수원시 전체 확인·증명, 교부건수의 13.8% 수준이었고, 해당업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권선구의 71.2% 수준이었으며, 가장 적은 장안구의 99.8%로 불과 1,170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

<표 4-23> 수원시 민원서류처리 건수 (2013년)

단위 : 건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신고, 등록	시험, 검사	확인·증명, 교부	기타	계
본 청	2,158	503	1,811	17,102	281	918,259	4,678	944,792
장안구	1,367	223	1,775	9,035	575	847,170	14,571	874,716
권선구	1,229	369	1,550	11,953	554	1,169,688	18,810	1,204,153
팔달구	2,386	166	1,093	10,558	477	915,361	3,811	933,852
영통구	1,889	155	1,295	8,508	628	929,226	32,603	974,304
보건소	-	-	-	-	-	96,090	-	96,090
차량등록 사업소	-	-	-	-	-	733,233	-	733,233
기타	-	-	-	-	-	-	-	96,090
계	9,029	1,416	7,524	57,156	2,515	5,609,027	74,473	5,761,140

<표 4-24> 수원시 민원서류처리 건수 (2014년)

단위 : 건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신고, 등록	시험, 검사	확인·증명, 교부	기타	계
본 청	1,894	413	1,561	18,201	345	1,026,713	7,458	1,056,585
장안구	1,561	241	1,126	8,013	610	783,440	14,563	809,554
권선구	1,873	416	1,854	12,137	794	1,354,495	16,748	1,388,317
팔달구	1,508	200	1,059	10,847	523	821,397	10,092	845,626
영통구	1,602	199	2,669	8,257	465	1,258,914	16,027	1,288,133
보건소	319	-	68	4,436	-	105,954	950	111,727
차량등록 사업소	-	-	-	-	-	741,575	4	741,579
기타	-	-	-	-	-	-	-	-
계	8,757	1,469	8,337	61,891	2,737	6,092,488	65,842	6,241,521

<표 4-25> 수원시 민원서류처리 건수 (2015년)

단위 : 건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신고, 등록	시험, 검사	확인·증명, 교부	기타	계
본 청	2,022	482	1,497	14,966	299	1,167,052	8,481	1,194,799
장안구	1,931	300	2,002	8,305	661	844,826	12,558	870,583
권선구	1,854	502	3,094	17,088	559	1,184,708	14,500	1,222,305
팔달구	2,558	236	2,131	11,763	558	847,720	9,519	874,485
영통구	2,111	220	3,490	8,022	367	1,106,009	16,967	1,137,186
보건소	285	-	62	3,136	-	106,120	793	110,396
차량등록 사업소	-	-	-	-	-	843,656	4	843,660
기타	110	-	2	833	-	35	416	1,396
계	10,871	1,740	12,278	64,113	2,444	6,100,126	63,238	6,254,810

- 수원시 인근의 경기도 내 타 지역과 비교해도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량뿐만 아니라, 하루에 직원 한명이 처리해야 하는 등록업무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편임
 -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에서 수원시 비중은 63.4%였으며,
 - 수원시의 하루에 1인이 처리해야 할 등록업무량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성이 141건이었고, 그 외 지역 중 100건을 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화성은 2014년 이후 자동차등록업무가 갑자기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수원의 69% 수준임(2017년 7월까지 누적치)
 - 수원시 다음으로 자동차등록업무량이 많았던 용인시의 경우에는, 1인당 처리건수가 58건에 지나지 않음

- 향후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으로 폭증할 자동차거래에 대비한 담당인력 증원 필요
 - 현재 수원에는 약 200개의 자동차매매상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으로 신규 입점할 매매상사가 약 12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차량등록 업무 증가는 자명하여 인력 증원이 반드시 요구됨
 - 또한 수원의 차량등록업무 중, 이전등록업무가 과반수 이상(67.1%)을 차지하고 있어, 매매상사 증가에 따른 관련 업무 및 이전등록업무의 담당인력의 증원이 필요

- 등록업무 외에도 현장 단속·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어려움 호소
 - 자동차등록과의 주된 업무는 등록업무이나, 현장 단속·점검 등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시간 및 인력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장 단속·점검은 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및 운행정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민원처리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2인 1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나가거나, 공익요원을 대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 현장 단속·점검 업무 인원의 경우, ‘건당 몇 명’ 식으로 계량적으로 접근하여 배치하려 하나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단속 중 민원인과의 실랑이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하루에 몇 건을 몇 명이 처리하는가를 계산하기 어려움

- 온라인 등록시스템의 낮은 활용도 및 타 지역과의 업무분담이 전무한 실정
 - 자동차등록업무 과중에 따른 담당인력의 업무분산과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국토부에서 온라인 등록시스템(www.ecar.go.kr)을 개발하였으나, 활용도가 매우 낮아 온라인 등록시스템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활용하면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자동차 등록 업무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등록자들의 정보 부재로 수월한 진행이 어려움
- 자동차매매상사조합이나 딜러들이 중간 수수료(계약서 만원, 자동차 등록 수수료 25만원)를 받기 위해 온라인 등록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음
- 또한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수원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업무의 약 50% 이상이 수원시보다는 시 도내·외 지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분산의 차원에서 온라인 등록시스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 협소한 업무공간과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효율 및 건강 악화

-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혼잡 및 소음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15년에도 민원편의시설을 확충¹⁷⁾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하루에 1,000여명 가량의 민원인이 사업소에 방문하여 민원실이 매우 혼잡하여 이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인과 사업소 직원들이 난청과 소음 증후군 등에 시달림
 - 특히 사업소 1층에 자동차관리팀과 등록팀이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특성상 등록팀에 민원업무가 많아 등록팀 쪽으로 민원인들이 몰려 등록팀 맞은편에 은행창구 등이 배치되어 있어 혼잡도가 극에 달함
 - 또한 겨울철 실내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아 직원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빈도가 잦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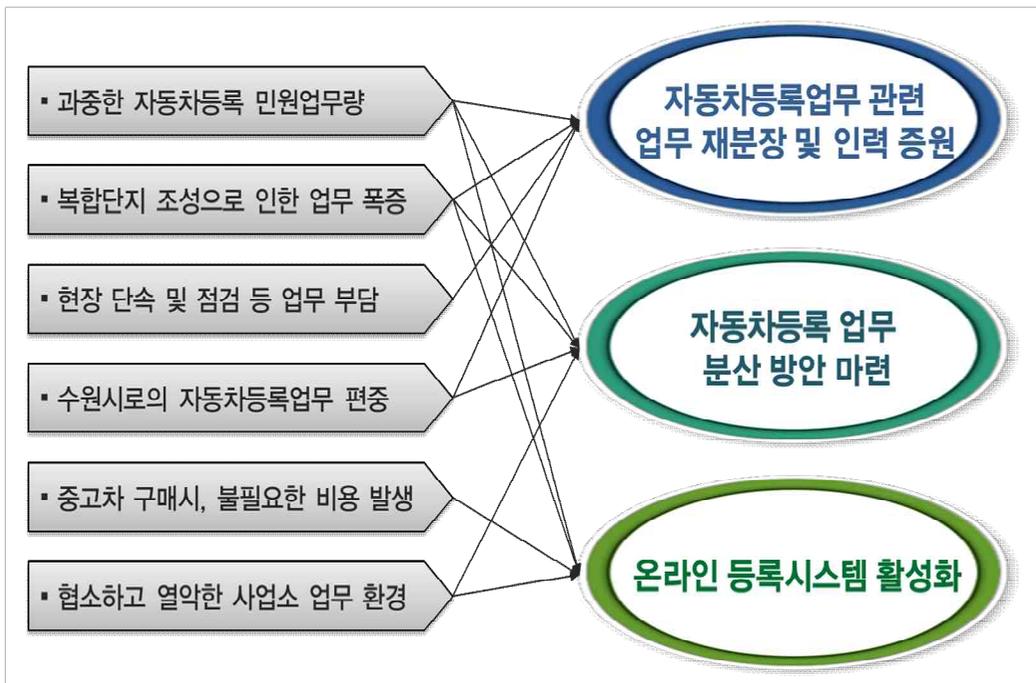
2. 개선방안 도출

■ 현재의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 필요

- 향후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업무 재분장 필요

17)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달라져, 경기도민일보 2015년 3월 30일자,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10#07Pm> 최종검색일 : 2017. 12. 27.

- 인력 증원 및 자동차등록 업무 분산 방안 마련 필요
- 온라인 등록시스템 활성화 방안 필요
 - 수원시로 편중된 자동차등록업무를 분산시키고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부당하게 청구되고 있는 중간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강화 필요
- 업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업무효율 제고
 - 온라인 등록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사업소 내방민원 감소로 업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업무효율 제고 기대



<그림 4-16> 수원시 자동차등록 관련 개선방향

제5장 수원시 차량등록업무 개선방안 도출

제1절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 정비 검토

1. 개요

-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관할하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 서든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단, 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다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
-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했던 이륜자동차의 등록 및 폐지 업무가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게 되었음
- 해당 제도는 지역과 무관한 등록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 및 비용의 소요가 축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전산시스템이 통합됨에 따라 전국 시·도 간 변경등록 업무의 경우에 신규 등록원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그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선 자동차 매매상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외 차량등록에 따른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업무가 2~3배 이상 대폭 증가하게 됨
 -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자동차 민원처리 건수가 인구규모 대비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원의 경우, 11개 중고차 매매단지가 존재하는데 해당 매매단지 중고차 거래량은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2010년 12월부터 전국자동차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수원지역내 민원보다 수원지역 외 민원을 더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¹⁸⁾

18) '수원 자동차 민원처리 '최다 등', 중앙일보 2017. 03. 15 일자, 기사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1373378> 최종방문일: 2017. 12. 18

- 전문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개진된 바 있음

■ 전문가인터뷰 내용

-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 및 서수원자동차 매매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천 건의 자동차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등록업무와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 등록업무가 주된 업무여야 하는데, 현장 단속 및 점검 등의 업무도 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됨. 그에 따른 보상이 매우 적어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국토부에서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배포하였으나, 실제 이행 실적이 적음. 온라인 시스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업무공간이 협소한데 비하여 하루에도 수백 명의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민원인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음

- 둘째, 2011년 이전에는 차량등록세가 등록지 세입으로 분류되었지만 2011년부터 지방세 관련 법률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지면서 차량취득세 및 등록세가 차량취득세 단일세목으로 통합되었으며,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차량취득세의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규정하였음
 - 그러나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징수금 전액이 사용본거지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변경되었음
 - 이에 종전 차량등록지의 징수금으로 분류되던 차량등록세분의 세입이 차량취득세로 단일 처리됨에 따라 징수금 전액이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분류되어 징세비 등 처리(행정)비용이 보전되지 않게 됨
 - 이는 업무가 과중되는 등록지의 재원확보가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져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된다는 문제를 야기함

2.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일반 내용

1) 자동차 취득세

(1)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함

- 즉,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써 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함
-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는데, 다른 자산과 달리 차량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과세함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艇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임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납세지

-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그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登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함
 - 다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함
 - 또한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함

■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12.27.>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관계 법령인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등록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자동차등록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납세지가 될 수밖에 없음
 -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함
 - 이와 같이 사용본거지를 판단하는 것은 소유자가 개인과 법인인 경우에 달라지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사용본거지가 됨

■ 「자동차등록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 등록면허세

(1)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세목간소화 정책에 따라 등록세를 폐지하고,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관련 없는 등기·등록을 종전 면허세와 통합하여 2011년도에 신설한 세목임¹⁹⁾
 -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등에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세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구청장, 도는 시장 및 군수가 과세하고 징수된 세액을 사용함
-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4조에서 ① 등록을 하는 자, ② 면허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의 외형상 등기·등록자라고 할 수 있음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가 공부상의 등기·등록 및 등재행위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공부기재행위를 받는 자인데, 재산권 등의 실질적 권리자와의 부합여부가 필수요건은 아님
 - 즉,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보존·취득·설정·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 등을 공부상에 등기·등록·등재행위를 하는 행위자체의 외형상 권리자를 말함
 - 당해 행위 내부의 실질적 권리의 존재여부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

■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5.12.29.>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19) 위택스 포털, <https://www.wetax.go.kr/html/new1.html>, 최종방문일 : 2017. 12. 19.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납세지

-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함

■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

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자동차등록제도 관련 문제점

1) 등록면허세의 성격 측면에서의 접근

- 등록면허세란 재산의 등록과 면허라는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등록이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재하는 것을 의미함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면허란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이나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청의 행위를 의미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 및 등재시 이러한 공부등록 행정행위의 수혜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는 재산권의 등기·등록과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및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자체인 바
 -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된 권리자의 유무·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 경위의 합법성 여부를 따져 합리적이고 정당한 등기와 등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상으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 등기·등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
 - 결국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인 등기·등록행위는 외형상의 등기와 등록

행위 자체가 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적법한 등기·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됨

- 등기·등록이란 재산권이나 기타 유사한 권리의 보존 및 제반 변동이나 이동사항을 행정관청의 공적 장부나 공부에 기록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임
 - 지방자치단체의 등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이나 권리의 등기·등록행위를 부담세력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보아 부과하는 직접세이고, 행위세이며, 유통세에 속함
 - 즉,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경우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수수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이 이루어지는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두는 것이 타당함

2) 등록지와 사용본거지의 상이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

- 앞서 살펴봤듯이,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등록업무는 동료직원이 휴가 또는 외출로 자리를 비울 경우, 1인의 업무처리량이 700건 이상인 날도 있을 정도로 과중되어 등록업무와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 이는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으로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게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문제는 종전의 차량등록지 징수금으로 분류되던 차량등록세분의 세입이 차량취득세로 단일 처리됨으로써 징수금 전액이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분류되어 행정처리 비용이 보전되지 않음
 - 결과적으로 등록지와 사용 본거지가 상이할 경우, 자동차매매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등록 관련 행정행위를 처리
 - 하지만, 그에 대한 세입은 해당 행정행위로부터 수혜를 입은 자의 사용본거지로 분류되어 등록지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음

3) 응익과세원칙에 위배

- 조세법의 양대 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있는데, 조세가 평등하게 부담되기 위한 원칙으로 응익과세의 원칙과 응능과세의 원칙이 있음
 - 이 중에서 응익과세의 원칙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받은 이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²⁰⁾

-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응능과세 원칙²¹⁾이 주장되어 현재까지 조세원칙으로 확립되었음
 - 응능과세의 원칙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같이 국세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지만, 쾌적한 주거환경과 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자녀의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익의 향유와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응익과세 원칙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²²⁾
 - 전국자동차등록제가 시행됨으로써 이동성 있는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지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해당 지방세는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에 납부하게 됨으로 인하여 응익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 특히, 등록면허세와 같이 그 행정서비스 비용과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상이할 경우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응익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합리함

4) 과세요건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로서 조세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정요건을 과세요건이라고 함
 - 과세요건의 구성요소는 ① 과세권자, ② 납세의무자, ③ 과세객체, ④ 과세객체의 귀속관계, ⑤ 과세표준, ⑥ 세율, ⑦ 조세소속 관계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국민에게 조세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데, 과세요건은 사전에 요건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자동차와 같은 이동성 있는 과세객체를 취득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물건을 취득한 자가 되지만,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이 누구인지 여부를 취득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남
 - 납세의무성립 시점에 조세채무자는 정해져 있지만, 조세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음²³⁾
 -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0) 마정화·유현정,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본 지방세법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9쪽.

21) 마정화·유현정, 앞의 글, 9쪽.

22) 김완석 외,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연구용역보고서, 2013, 43쪽.

23) 김완석 외, 앞의 글, 50쪽.

등록지(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법과 관계 법률에서 납세지의 기준인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음. 왜냐하면 사용본거지는 「자동차관리법」의 아무런 위임 없이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지 역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
- 보통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취득한 때) 이후에 등기·등록이 이루어지므로 취득 시점에는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정해져 있지 않음
- 결국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가 만들어질 때,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권은 거래의 실질이나 과세대상 물건의 본질적 사용현황에 따라 정해질 필요가 있음

제2절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한 법령 정비방안

1.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전가능성

- 사용본거지가 납세지라고 하더라도 차량취득세 중 일정비율(구,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전가능성
- 이와 관련하여 법령해석 사례가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을 차량 취득세 징수 위임 구청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②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 취득세의 징수교부금을 취득세 부분과 등록세 부분으로 배분하여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주소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임
-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구를 차량 취득세 징수 위임 자치구로 정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함
 - 그 이유는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특별시세’에 속하고(「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이 중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사용본거지’임(「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2호)
 -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호)를,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같은 조 제2호)를 의미함
-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제5조 제1항)
 - 구청장은 그 ‘구내의 특별시세’를 징수하여 특별시에 납입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제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 본문), ‘구내의 특별시세’에는 「지방세법」상 구청이 부과·징수를 관할하는 ‘취득세’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은 차량 취득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함
 - 그런데,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르면,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하되(제1항),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제2항), 이른바 ‘전국자동차등록제(자동차 등록업무 무관할제)’가 시행되고 있음
 - 위와 같은 법령 아래에서는, 납세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지인 ‘사용본거지’와 자신이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관청’이 일치하지 않게 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 개정안」(이하 “서울시조례안”라 함) 제5조에서 이러한 자동차 등록제도에 근거하여 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지방세 관련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 취득세의 징수교부금을 취득세 부분과 등록세 부분으로 배분하여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주소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의거하여 특별시세 징수의 비용은 구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서울시조례안 제17조제3항에서는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로 배분하여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주소지)청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여기서 조례로 위임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란 서울특별시나 지방세 징수 위임 구청에게 시세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시세징수교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관련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인바, 지방세법의 전부개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을 말함)
- 현행법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현재 등록세라는 세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조례에서 취득세 중 등록분 취득세와 취득분 취득세를 구분하여 각 구청에 시세징수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징수비용을 부담한 구청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지방세 관련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사용본거지가 납세지라고 하더라도 차량취득세 중 일정비율(구,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전 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왜냐하면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로 배분하여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사용본거지)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세목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1)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방안

- 2010년 12월부터 전국자동차등록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지역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임
- 이에 따라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치단체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취지임

-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인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사용본거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최초 등록관청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사용본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할 경우, 최초 등록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본거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설정하고, 징수분에 대하여 징수교부금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²⁴⁾
 -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에 따른 필요경비를 보상하기 위한 수수료의 성격을 지님
 - 보다 구체적으로 징수교부금은 시·군·구의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징세 행정기구가 없는 본청에서 시·군·구가 시·도세의 징수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필요경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²⁵⁾
 - 따라서 수원시 시세 기본조례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최초 등록관청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 수수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 징수하는 요금”이라 할 수 있음
 - 즉, 행정주체가 개인에게 제공하여 준 공적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²⁶⁾
- 수수료가 특정 개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그 사무가 특정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의 이익 또는 이익발생의 가능성을 위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임
- 수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용료가 있는데, 수수료와 사용료가 특정한 이익에 상응하여 특정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가치라는 점에서 동일함
 - 하지만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
 -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영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이함

24) 김완석 외, 앞의 글, 67쪽.

25) 박상수 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31쪽.

26) 김태일 외, 민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9, 15쪽.

-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에 대한 재산권이나 기타 유사한 권리의 보존 및 제반 변동이나 이동사항을 행정관청의 공적 장부나 공부에 기록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행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재산권이라는 권리발생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수수료 부과와 정당성은 수수료의 개념에서 도출할 수 있는데, 특정인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인에게 특수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주체의 입장에서는 특수경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부담분배의 공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남. 결국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임
 - **특정성의 원칙** : 수수료는 일반인 가운데 특정한 자가 관계되는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음. 여기서 특정인은 수수료의 대가로써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 자를 지칭함. 즉, 수수료는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것임
 - **용역성의 원칙** : 수수료는 특정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의 요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거나 행정상 필요에서 생긴 사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
 - **비용변상의 원칙** :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주체의 시간적·물리적 비용이 소요됨. 수수료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비용지불로 제공된 특정한 서비스의 수혜자는 그 비용을 변상해야 함
- 2010년 전국자동차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무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등록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해당 제도 시행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예상하여 등록수수료의 2,000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500원만 인상되었음
 -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 관련 별표 30에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말소 등록 수수료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수수료

납부자	금액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2천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천500원 으로 한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동일 시·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1천300원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500원 으로 한다.
5.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천원

-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신고 업무를 상호 대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신차출고장 및 중고차매매단지가 위치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업무량이 편중되고 있음
 - 앞서 살펴봤듯이, 수원시의 2017년 자동차 등록 민원 건수는 488,931건(2017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13,084건이 증가했으며 이는 2.75%p 증가한 수치임²⁷⁾
 - 또한 경기도와 도이치모터스(주)가 국내 최대규모의 자동차복합단지인 수원자동차복합단지에 259개 자동차 매매상사가 입점할 예정에 있음²⁸⁾
 - 따라서 향후 수원시에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자동차등록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차량 등록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 등록 시 사용본거지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위한 기회비용이 절약됨
 - 그러나 전국자동차등록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없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대행 업무처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행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됨
 - 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비용은 실질적으로 보전되지 않는

27) 수원시청 차량등록 통계(http://www.suwon.go.kr/web/deptHome/dep_traffic/traffic05/traffic05-05/swcar/BD_stats.do, 최종 방문일 : 2017. 12. 20.).

28) ‘수원자동차복합단지’ 순항...259개사 입주 희망, 한겨레 2017. 03. 21. 자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87389.html>, 최종방문일 : 2017. 12. 20.)

다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응익부담 원칙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행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수수료 인상이 필요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30> 수수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등록업무 분산을 위한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활성화 방안

(1) 자동차 매매업의 의의

- 「자동차관리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차는 제외)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고차를 사고팔거나 알선하는 사업을 자동차 매매업이라고 함. 즉, 신차나 이륜차를 사고파는 일은 자동차 매매업이라고 명명하지 않음
 - 또한 신차 판매업은 소비자에게 차를 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은 자동차를 사고, 팔고,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신차 판매업보다 영업 범위가 넓고 다양함
 - 또한 자동차라는 같은 상품을 취급하지만 신차 판매업체가 차를 팔면 ‘신규 등록’ 통계에 잡히고, 중고차 매매업체가 차를 팔면 ‘이전 등록’ 통계에 포함됨

(2) 중고차 거래 현황

- 국토교통부는 매월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와 이전 등록 건수를 집계하는데, 이에 따르면 2016년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183만 5,849대로 전년 대비 1만 1,253대 감소하였음
 - 반면에 중고차 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기준이 되는 자동차 이전 등록 건수는 378만 116건으로 전년도인 366만 6,674건보다 11만 3,442건 증가한 수치임
 - 이전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12년에는 328만 4,429건, 2013년에는 337만 7,084건, 2014년 346만 8,286건 매년 9만 여건이 증가 추세를 보임
 - 2015년에는 전년보다 19만 8,388건이 증가한 366만 6,674건으로 집계됨
-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5,140개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006개, 서울 528개, 대구 527개, 경북 365개, 경남 363개,

전북 309개, 인천 300개 순으로 나타남

- 매매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9월말 현재 3만 5,482명으로,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경기 1만 1,111명, 서울 4,602명, 인천 4,502명, 대전 1,934명, 대구 1,816명, 부산 1,678명, 경남 1,591명 순으로 나타남

(3) 중고차 거래 관련 법체계

-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자동차관리법」이라 할 수 있음
 - 동법 제2조 제6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중 자동차 매매업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중고자동차 사업을 규율하는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일종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서 규율됨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 구체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

- 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함
-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자체적인 조례를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가능함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①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②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 ③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④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위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1.6.>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2014.1.7., 2016.1.28.>
1. 삭제 <2015.1.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삭제 <2016.1.28.>
- ⑦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28.>
-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 「자동차관리법」

-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 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에서 정하는 매매알선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음
 - 수수료에는 ① 매매알선수수료, ② 등록신청대행수수료, ③ 관리비용, ④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수수료가 포함됨
 - 또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6.1.7>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 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음²⁹⁾
 -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교통 범칙금과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였음
 -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 및 중고매매업자들 중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음

29)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동차관리법」 제65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에서 정하는 매매알선 수수료에 등록신청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온라인시스템에서는 이를 무료로 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소조합들이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에게 10,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수수료로 25만원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업무가 과중되는 자동차 등록 공무원의 업무 분산 및 중고차 매수인의 수수료 절약을 위하여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활성화 할 방안이 필요



자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그림 5-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4. 조례의 제정을 통한 온라인시스템 운영 활성화

-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시스템을 배포하기 전인 2009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인터넷자동차등록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자동차등록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자동차등록민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되었음
 - 동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등록 서비스는 자동차의 신규·

이전·변경·말소·저당등록 5 가지 서비스로 규정함

- 동 조례 제4조에서는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해당 시스템 이용자는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는 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반 개인, ② 자동차등록 대행업자, ③ 자동차매매업 종사자, ④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업자, ⑤ 폐차업 협회 등, ⑥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포함됨
- 동 조례 제5조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즉, 구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인터넷 자동차 등록 시스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음. 구체적인 사용료는 다음과 같음

종 류	단 위	사 용 료	비 고
1. 신규등록	1건	1,000원	
2. 이전등록	1건		
3. 변경등록	1건		
4. 말소등록	1건		
5. 저당등록	1건		

- 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자동차등록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2010년 7월 5일자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고도화 사업 시행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S)를 실시함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던 ‘인터넷자동차등록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2011년 3월 4일자로 폐지하게 되었음
- 동 조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자동차등록 시스템의 이용을 통하여 종전에 업무가 과중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위 서울특별시 사례와 같이, 업무가 과중되는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원시 또는 경기도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및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1. 자동차 등록 민원 건수 폭증

- 수원시, 경기도 내 자동차등록업무의 63.4%를 처리
 - 수원시의 자동차등록대수 비중은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약 15%, 경기도의 약 63.4% 수준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큰 편임
 - 수원 차량등록과의 하루 평균 민원처리는 8,082건으로, 2016년에 비해 4.3%p 증가
 -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 및 수원의 지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수원시의 자동차등록 대수는 2010년 이후 한 번의 감소 추세 없이 꾸준히 증가해 옴
 -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에는 약 200개의 자동차 매매상사가 입점해있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 구매자가 방문하고 하루 평균 약 900건이 넘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뤄짐
 - 수원시의 중고차거래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수원시 자동차등록민원업무의 상당수가 중고차 이전등록업무임
 - 수원시의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의 3배에 달함(2015년 중고차 이전등록건수, 울산: 84,186건, 수원: 239,881건)
- 수원시,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직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가장 높은 수준
 -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민원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수원시의 하루에 담당직원 1인이 처리해야 하는 차량등록 민원처리 건수가 159건으로 경기도 내 수원 인근의 9개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음
 - 2016년·2017년(1~7월)의 자동차등록대수 역시, 수원시가 가장 많았으나, 자동차등록 담당직원 수는 용인에 비해 6명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화성시는 2014년 이후 자동차등록업무가 급증하여 2016년에 담당직원 1인당 일별 민원처리건수가 수원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1~7월)에는 수원이 더 높았으며,
 - 수원시와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1인당 일별 민원처리건수가 100건을 넘는 지역은 없으며, 수원시 다음으로 업무량이 많은 용인시의 경우도 60건을 넘지 않음

〈표 6-1〉 수원 및 인근지역의 자동차등록업무량 비교

지역	자동차등록 담당 직원 수(명)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직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일별 건수)	
		2016	2017(1월~7월)	2016	2017(1월~7월)
수원	24	475,847	537,176	83	159
용인	30	410,302	419,974	57	58
성남	15	332,978	337,684	92	94
안산	14	291,524	295,743	87	88
화성	10	318,430	337,771	133	141
안양	10	209,151	211,742	87	88
평택	15	228,762	237,217	64	66
오산	6	88,232	91,356	61	63
의왕	7	59,083	59,549	35	35
군포	6	98,576	99,624	68	69

2. 자동차등록제 관련 현황 분석

■ 자동차등록제 및 관련 업무 현황 분석

- 자동차등록은 차량 운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 사항으로서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대상이 되며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은 불가함
- 자동차등록 업무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 총 8가지로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원동기 형식 및 차종과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 저당권 관련 사항, 이외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기재
-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전국자동차등록제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연간 3,344억 원의 국민 부담이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수원을 비롯한 대도시에 자동차등록업무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국 및 수원의 자동차등록 현황

- 2016년 전국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180만대로, 2020년경에는 2,5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자동차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동차정책 수립·추진이 필요함
- 수원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수원 다음으로는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안양시 등의 순임
 - 전국자동차등록제도의 시행 직후, 수원시는 1일 민원처리량이 7,200여 건에 달하는 등 민원업무가 폭주함

■ 수원시 자동차등록과 조직 및 업무량 현황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2017년 1월 2일 수원시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차량등록 사업소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변경
 - 직제개편 이후 기존 사업소의 팀별 구성인원이 기존 44명에서 46명으로 2명이 증원 되었으나 검사보험팀과 특별사법경찰팀이 현 사업소의 자동차관리과로 이전되어 자동차등록과 자체로는 36명으로 줄어듦
- 자동차등록과는 등록 1, 2팀과 매매상사팀, 차량세무팀, 복수원민원센터팀 총 5개팀, 총 인원 36명으로 구성됨
 - 등록1, 2팀의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는 약 65만 여 건으로 등록업무 중 이전등록과 관련된 업무가 43만1,872건으로 전체의 6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복수원민원센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업무 전환에 따른 민원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4년 5월 장안구청사 1층에 개소
 - 복수원민원센터는 비사업용차량의 신규·변경·이전등록,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취득세 신고접수를 담당하며 타 등록관청에 대한 등록업무 및 말소 등록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
- 신규·변경·이전등록 관련 복수원민원센터의 처리건수를 합한 2017년 1월부터 9월 까지의 수원시 전체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해당 기간 동안 68만4,659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9월까지 처리한 자동차등록 민원 중, 차종과 무관하게 전출입을 제외하고 등록관청 여부만을 비교했을 때에 등록관청은 350,480건으로 타등록관청 건수인 70,365건의 약 5배가 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며, 관할지역(수원시, 49.8%)보다 시도내·외 지역(50.2%)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입·출을 제외한 관할지역(수원시)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는 209,6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41,429건(33.6%), 경기도 외 지역 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69,735건(16.6%)임

■ 자동차등록 업무량 증가 원인 분석

- 2014년 9월, 자동차 번호판 교부 수수료 인상 전까지 타 지역 대비 수원의 수수료가 1,000 ~ 8,000원 가량 저렴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민원이 집중되었으며,
- 자동차등록과 인근에 약 200개의 매매상사가 입점해 있는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라 위치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천건의 자동차등록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음
 - 수원시의 중고차거래량은 2015년에 11만5,281대가 판매되었고 2016년에는 13만 8,000여대가 팔린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매매상사별로도 월평균 판매대수가 58대로 전국 평균인 25대의 두배 수준을 넘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3. 민원 건수 폭증으로 인한 부작용

■ 자동차등록업무 과중으로 인한 업무효율 및 근로의욕 저하

- 수원시 자동차등록 담당직원 1인이 하루에 처리해야하는 민원처리건수는 159건으로 경기도 내 인근지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수준으로 직원들의 휴식시간 보장은 물론 화장실을 사용할 시간조차 부족할 정도임
 - 2인 1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병가나 연차 등의 이유로 동료직원이 부재할 경우에는 1인당 민원처리건수가 하루에 700건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여 자동차등록과 직원들은 모두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
- 자동차등록업무 과중은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수원시 자동차등록과 內 전체 팀이 매년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전근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후생복지비로 매달 5만원을 받고 있으나 직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
-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업무 외에도 현장 단속 및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시간적·인력적으로 어려움이 큼
 - 현장 업무는 2인 1조로 나가는 것이 원칙임에도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처리도 소화하기 어려워 야간에 단속하거나, 공익요원을 대동하기도 하나, 등록업무 과중으로 현장 단속·점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음

- 비효율적이고 협소한 업무공간 활용으로 직원들의 업무효율 및 건강 악화
 - 매일 천 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있어, 사업소 내 업무공간은 항상 복잡하고 공기질이 나빠며 소음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어려움 호소
 - 업무특성상 민원업무가 많은 자동차등록팀 자리로 민원인들이 몰리고 등록팀 맞은편에 은행창구 등이 있어 혼잡도가 극에 달하고 있어,
 - 민원인들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공간문제와 소음 관련 문제를 자주 제기하고 있으며, 사업소 직원들의 경우 난청과 소음증후군 등에 시달림
 - 또한 겨울철 실내 환기가 잘되지 않아 직원들이 호흡기 질환에 자주 걸림
 - 직원들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업무공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4. 타 지자체 비교·분석

- 경기도 내 타 지역의 차량등록 업무 현황 비교·분석
 - 자동차등록업무 현황 관련 비교지역 선정을 위해 수원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9개시(市)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함
 - 조직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각 시별로 운영하는 조직의 형태, 민원처리 사무실의 독립청사 운영 여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매매단지와의 접근성 등을 파악하였음
-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조직운영 형태
 - 지역별로 자동차등록사업소, 국 단위 조직 내에 자동차등록과, 또는 국→과 아래에 자동차등록팀 형태의 조직편제 구성
 - 수원시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편제로 차량등록업무를 수행 중인 곳은 용인시였으며 사업소 형태의 지역은 성남, 안산, 화성, 평택 4개 지역임
 - 안양, 오산, 의왕, 군포는 국 단위 조직 산하에 과 또는 팀으로 등록업무 수행
 - 용인, 성남, 안산, 화성 등과 같이 인구와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차량등록업무 사무소가 시청 청사와는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며 민원업무를 수행
 - 의왕, 군포는 시청 청사 부지 내의 민원처리 사무실에서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처리
- 자동차등록 담당 인력 및 업무처리 현황분석
 - 차량등록 담당 직원은 등록업무(신규, 이전, 말소, 건설·기계등록)에 한정하여 인원 파악

- 자동차등록대수는 가장 최근자료인 2016년도 자료와 2017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직원의 일별 민원처리건수 파악
- 2016, 2017년 2개 연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 지역은 없었으며 1인당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지역은 화성시로 2016년 133건, 2017년 141건 일별 업무를 담당
- 일별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의왕시로 2016년과 2017년 모두 35건 담당

5. 수원시 민원수요 예측 및 차량등록 업무의 적정인원 산출

■ 자동차등록 업무의 적정인원 산출

-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에 필요한 적정인원수 산출을 위해 수원과 유사한 조건의 경기 지역 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1인당 평균 차량등록 업무처리량을 적정업무량 기준으로 하여 현재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의 적정인원을 산출하였음
 - 경기도 내 인구수 50만 이상인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총 9곳이나, 수원시와 이상값(outlier)인 화성을 제외한 7곳의 1인당 평균 차량등록 업무처리량 78건(1일 기준)을 적정업무량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 수원의 2016년 자동차등록대수(457,847건) 기준으로는 25.3명, 2017년 1월부터 9월 까지의 등록대수 기준으로는 약 34.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정원인 24명에 비해 약 10명가량의 인원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및 적정인원 예측

- 2018년 말 완공될 예정인 자동차복합매매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증가하게 될 수원시 자동차 판매량을 감안한 자동차등록 민원수요 예측³⁰⁾ 및 이에 따른 적정인원 산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가정함
 - 1)수원시 자동차 판매량의 증감이 인구수 증감과 비례하며, 2)수원시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이 수원에서 처리됨
- 2045년까지의 인구(예측)수를 수원 인근 지역의 자동차 1대당 인구수 평균인 2.48으로 나누어 자동차등록 민원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조용준(2016)의 인구예측 결과를 활용
 - 실제등록 건수와 예측치 간의 격차가 작은 합리적 시나리오의 2045년에 자동차등록 민원수요는 약 54만 건으로 2016년에 비해 약 7만 건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8년 말 완공될 자동차복합매매단지에 현재의 약 60% 수준인 약120개의 자동차매매상사가 입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반영하여 2019년부터 자동차

30) 조용준, 2045 수원시 인구추계 모형 개발 및 예측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6

- 등록 수요에 1.6배하여 도출한 결과 자동차복합매매단지 조성으로 2045년에 예상되는 자동차등록 민원수요는 약 87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앞서 도출한 민원수요 예측결과에 1인당 평균 자동차등록 업무처리량을 적용하면 2019년 자동차복합매매단지 완공 이후 약 40.6명의 등록인원이, 2045년에는 44.8명의 등록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됨

6. 개선방안 도출

■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 정비 검토

- 등록지와 사용본거지의 상이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
 -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으로 종전의 차량등록지 징수금으로 분류되던 차량등록세분의 세입이 차량취득세로 단일 처리되어 징수금 전액이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의 지자체 세입으로 분류되어 행정처리 비용이 보전되지 않음
 - 이동성 있는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지의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지방세는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에 납부함으로써 응익과세의 원칙 위배
 - 자동차와 같은 이동성 있는 과세객체를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이를 취득한 자가 되지만, 과세권자인 지자체 장이 누구인지를 취득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과세요건명확성 원칙 위배

■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법령 정비방안

-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전가능성
 - 납세지가 사용본거지라 하더라도 차량취득세 중 일정비율(구,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한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전가능성 존재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초 등록관청 소재 지자체와 사용본거지 지자체가 상이할 시, 최초 등록 지자체는 사용본거지 지자체의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설정하고, 징수분에 대하여 징수교부금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안 고려
-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 전국자동차등록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수입 없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대행 업무 처리가 증가하였음에도 대행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비용은 실질적으로 보전되지 않는다는 문제 발생
 - 따라서 응익부담 원칙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행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이 필요

-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등록업무 분산을 위한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활성화
 -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범칙금과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 및 중고매매업자들 중, 해당 시스템을 이용자가 매우 적어 이에 대한 온라인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정책 제언

1. 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화 추구

- 업무부담 경감 및 향후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조직 개편 필요
 - 현재 자동차등록과는 5개 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업무 과중으로 업무 재분장 및 인력 증원이 요구되며,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등록과를 별도 사업소로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음
 -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자동차등록과, 자동차세무과, 자동차관리과 등 3개 과로 업무를 분장함
 - 자동차등록과의 차량세무팀을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과 특별사법경찰팀을 자동차세무과로 배정시켜서 차량세무업무와 함께 체납관리 및 의무보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 자동차관리과에 자동차관리팀, 건설기계관리팀, 자동차검사팀을 배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또한 앞서 예측한 민원수요 증가에 따른 적정인원이 2019년에 약 40.6명, 2045년에 44.8명으로 향후 2-3년 내에 현 정원인 24명보다 16명가량의 등록업무 담당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인력증원이 필요
 -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로 공무원의 인력증원이 자유롭지 않은바, 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인력 보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홍보 강화

- 조례 제정을 통한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자동차등록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사례와 같이, 자동차등록민원의 편익 증진 및 온라인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또는 경기도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및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차량등록업무 과중에 따른 업무분산 및 중고차 구매자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에서 온라인 등록시스템(www.ecar.go.kr/)이 마련되었으나, 활용도가 매우 낮음
 -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등록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등록자들의 정보 부재로 수월한 진행이 어려움
 - 자동차매매상사조합이나 딜러들이 중간 수수료(25만원)를 받기 위해 온라인 등록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며,
 - 업무적으로도 수원시에서 처리하는 등록업무의 약 50% 이상이 시 도내·외 지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분산 차원에서 온라인 등록시스템 활성화가 필요
- 온라인 시스템 관련 지역 언론 보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 홍보 강화
 -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 및 수원역 주변에 영상·브로셔 등 홍보물 배포 또는 경기일보 등과 같은 지역 언론사에 온라인 시스템 이용 관련 보도 및 광고 게재
 -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을 최신 홍보 트렌드를 적극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 자동차등록 절차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버스정류장 광고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 등록하면 25만 원이 절약된다는 부분의 홍보 필요
 - 수원시 보도자료 및 소식지 등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 강성철(1988),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적정인력규모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권 제2호, pp. 147-167
- 김광주 외(2008),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제16권 제2호, pp. 23-44
- 김대건(2005), 지방정부의 조직변화와 행정수요 변화와의 정합성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승식(2013),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끌리는 책
- 김신복(1980), 공무원 수의 총량규모 추정 및 기관별 정원산정 기법, 행정논총 제18권 제1호
- 김완석 외(2013),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연구용역보고서
- 김태일(2000),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공무원 규모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보 제34권 제1호, pp. 117-135
- 김태일 외(2009), 민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김태일 · 장덕희(2006),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의 국제비교, 한국행정학회보 제15권 제4호, pp. 3-26
- 마정화 · 유현정(2016),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본 지방세법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상수 외(2014),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손재식(1993), 지방공무원의 정원적정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수원시청(2016), 2016 수원시정백서
- 신원부 · 원구환(2008),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제9권 제4호, pp. 71-89
- 신원부 · 전봉기(2010), 지방자치단체 합리적 정원산정모델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제 16권 제3호, pp. 143-183
- 이명석(1998),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제32권 제2호, pp. 183-199
-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2008년 4/4분기 산업동향 및 2009년 1/4분기 전망, 이슈페이퍼
- 한국기업평가(2017),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산업분석, 월간 웹진 Vol. 693

<기타 자료>

경기도민일보, <http://www.kgdm.co.kr>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위택스, <http://www.wetax.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통계로 보는 수원, <http://stat.suwon.go.kr/stat/index.do>

한겨레, <http://www.hani.c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저자 약력 |

조용준

경제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재정경제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naya@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불평등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2017, 수원시정연구원)

「2045 수원시 인구추계 모형 개발 및 예측연구」(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실업률·고용률의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심화연구」(2016, 수원시정연구원)

신지윤

행정학석사

수원시정연구원 재정경제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jyshi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불평등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2017, 수원시정연구원)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규제·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지적제조사사업 예비타당성분석의 타당성 검토」(2014, 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